



2019 IFRS 17 실무 적용사례

2019. 11.

주관 한국보험계리사회
후원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2019 IFRS 17 실무 적용사례

2019. 11.

주관 한국보험계리사회

후원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2019 IFRS 17 실무 적용사례



머 리 말

한국의 보험업계는 사업의 투명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통일된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및 지식 배양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FRS 17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시스템 구축과 실무적용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보험계리사회는 IFRS 17 도입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성공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IFRS 17을 상대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IFRS 17 주요 이슈별 실무 적용사례’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사례집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사례집에서는 손보사의 사례까지 확대하여 생·손보 보험업계 전반의 IFRS 17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집에 제시된 사례는 향후 변경의 여지가 있으며, 하나의 이슈에 대한 방안이 다수인 경우 그 순서는 임의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실무사례는 법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IFRS 17기준서의 변동사항에 따라 동 실무사례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사는 IFRS 17기준서와 그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숙독하고 각 보험회사의 상황에 따라 동 실무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보험회사의 IFRS 17의 성공적인 도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보험계리사회는 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I. 계약서비스마진(CSM) 후속측정

1. CSM 상각	8
2. CSM 조정	23
3. 손상계약 CSM 변동분석	26

II. 발생사고부채

4. 정의	38
5. 현금흐름의 추정	58
6. 할인율	80
7. 변동요인 분석	85

III. 보험료배분접근법

8. 유사성Test 및 손실부담계약	92
9.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98
10. BAA 잔여보장부채 측정 및 수익인식	99



IV. 재보험

11. 포트폴리오 및 계약그룹	104
12. 계약의 경계	107
13. 재보험 현금흐름	109
14. 위험조정	112
15. 손실부담계약	113
16. 투자요소	115
17. 비비례 재보험	120

V. 기타

18. 납입면제	122
----------------	-----



계약서비스마진(CSM) 후속측정

I

계약서비스마진(CSM) 후속측정

1. CSM 상각

Q 1.1

보험계약 서비스 이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CSM 상각액을 결정함
 - 서비스 제공이 반영되기 전 CSM 금액은 이자부리 및 CSM 조정(미래서비스 관련 현금흐름 변동, 보험료 및 투자요소 예실차 등이 고려된 금액임)
 - 회사는 CSM 기말 잔액을 전 기간보장단위로 배분하고 그 중 당기 보장단위만큼 만을 CSM 당기 상각액으로 인식

$$\text{※ 당기CSM 상각액} = \frac{\text{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text{잔여기간에 제공될 보장단위(당기 및 미래)}}$$

Q 1.2

보장단위는 무엇인가?

- ◆ 집합 내의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장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됨
→ 보장단위 = 보장수량 × 기대 보장 듀레이션
- ◆ 2018년 5월, TRG에서는 보장단위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5월 TRG AP05)
 - 보장단위의 결정은 회계정책의 선택(accounting policy choice)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provision of services)을 가장 잘 반영하는 판단과 추정을 수반함(IFRS 17 문단 20)
 - 기간에 따른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 양을 반영
 - 하나의 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수량' 결정시 계약자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급부를 고려
 - 보험사건 발생 시,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유효한 보험금(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
 - 하나의 보험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할 서로 다른 확률은 해당기간에 제공하는 급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사건에 대한 발생확률은 해당기간 제공하는 급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5월 TRG AP05 문단30 iii)
 - 보장단위 결정시 계약간 서로 다른 수익성 수준은 미반영
 - 보장단위 결정시 기대 해약은 반영되어야 함
 - 단, 보장단위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는 기업의 판단사항으로 규정(허용사항)

Q 1.3

보장수량에 반영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 ◆ 일반모형에서도 보장수량 결정시 보장 및 투자급부를 모두 고려하도록 기준서를 개정(19년 6월 IFRS 17 개정 공개초안)
 - 일반모형: 보험 및 투자 수익서비스* 고려해 보장수량 결정
 - 2019년 IFRS 17 개정 공개초안을 통해 보장수량 결정시 투자 수익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
 - 변동모형: 보험 및 투자 관련서비스 고려해 보장수량 결정
 - 2019년 IFRS 17 개정 공개초안에 따른 변경사항 없음, 기존 IFRS 17 기준과 동일

〈참고〉 투자 수익 서비스의 요건

-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모형이 적용되는 계약은 투자 수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may provide)
- ① 투자요소가 있거나 계약자가 인출(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투자요소 또는 보험계약자가 인출(해지)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양(+)의 투자수익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 ③ 회사가 양(+)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투자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Q 1.4

보장수량의 대응치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또한, 대응치별 기준서 부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 **보장수량의 구성요소인 보험 및 투자 서비스의 대응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가능**

- 보험 서비스의 대응치로는 ① (주/특) 가입금액, ② 최대급부, ③ 환산 가입금액, ④ 연환산 순보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투자 서비스의 대응치로는 해지환급금 및 연환산 순보험료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보장수량 결정시 Guideline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참고〉 18년 5월 TRG에서 제시된 보장수량 결정시 Guideline

- ① 기간에 따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장의 수량을 반영해야 함
 - * 증액보험(5년 내 사망시 1억, 5년 후 2억)의 보장수량은 5년 내 1억, 5년 후 2억
- ② 기간에 따른 보장급부의 기대(발생확률)는 고려되지 말아야 함
 - * 일반적으로 계약체결후 기간이 경과할수록(나이 증가) 보장급부 발생확률이 증가하나 ‘보장수량’ 결정시 발생확률 미반영
- ③ 수익성이 고려되어서는 안됨
 - * 동일 급부크기를 보장하더라도 수익성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보장수량 결정시 상이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
- ④ 담보별 서로 다른 보험확률 반영 가능(손보 추가 고려사항)
 - * 동일한 담보(보장급부)의 기간별 차이가 아닌 다른 담보의 발생확률은 고려 가능

A 보험급부 대응치

- ◆ 생보에서는 (방안 1-1)과 (방안 1-2)를 고려하고 있으나, 손보의 경우 (방안 3)과 (방안 4)를 활용하여 보험급부 대응치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 중
 - 다양한 담보가 존재하는 손보 계약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응치 결정 Guideline 4는 (방안 2)과 (방안 3)에서만 충족 여부를 검토함

방안 1-1 (주/특) 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응치로 간주

- ◆ 가입금액은 보험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으로서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을 합산하는 방식

- 대응치 결정 Guideline(요건 ① ~ ③)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대응치 결정Guideline	충족여부	판단 근거
① 기간별 급부크기 반영	○	계약별로는 기간별 급부크기를 반영하지 못하나, 포트폴리오 기준 에서 대부분 반영*
② 기간별 기대확률 미반영	○	가입금액은 기대확률과 무관
③ 수익성 미반영	○	가입금액은 수익성과 무관

* 포트폴리오 내 기간별로 급부크기가 변경되는 상품(증액 등) 비중 작음

방안 1-2 최대급부를 보험급부의 대응치로 간주

- ◆ 모든 위험담보의 급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IASB가 제시한 방법이며 Guideline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단, (방안1-1) 대비 실무적으로 산출의 복잡함

〈참고〉 ① (주/특) 가입금액과 ② 최대급부 산출 예시

▣ 가정

-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사망보험금 1억
- 증액특약: 가입금액 1억, 사망보험금 1억(10년 이내 사망시)
2억(10년 이후 사망시)

▣ 대응치 산출값

- (방안 1-1) 적용시 보장급부 대응치: 2억(전 기간)
- (방안 1-2) 적용시 보장급부 대응치: 2억(10년 이내), 3억(10년 이후)

방안 2 담보별 환산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응치로 간주

◆ 담보별로 차이가 나는 총액을 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연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 대응치 결정 Guideline(요건 ① ~ ④)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대응치 결정Guideline	충족여부	판단 근거
① 기간별 급부크기 반영	○	담보별로 빈도-심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입금액을 환산함 * 기간별 계약상 급부의 증감 * 계약 간 급부의 차이 모두 반영 가능
② 기간별 기대확률 미반영	○	환산가입금액은 기간별 기대확률 무관
③ 수익성 미반영	○	환산가입금액은 수익성과 무관
④ 담보별 서로 다른 보험확률은 반영 가능	○	반복보장 vs. 1회보장, 실손 vs. 정액, 보장범위 등으로 영향받는 담보별 보험확률의 차이를 조정 반영

〈참고〉 보험금부에 관한 담보별 환산가입금액 예시

▣ 담보별 가입금액 및 보정

- 주계약 :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60년)
- 특약 : 교통사고사망 가입금액 1억(40년)
(보장범위 보정: 일반상해사망의 2/10확률, 일반상해사망에 포함)
(실손)배상책임 가입금액 1억(60년)
(반복지급보정: 최대 연 12회 반복)
(실손보장보정: 0.05 = 가입금액 대비 평균지급율, 보험금으로 가중평균함)

▣ 대응치 산출값

- (40년 이내) 산출값: 1.8억 (= 1+1×0.2+1×12회×0.05)
- (40년 이후) 산출값: 1.6억 (= 1+1×12회×0.05)

방안 3 연환산 순보험료를 보험금부의 대응치로 간주

- ◆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 총액을 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연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 대응치 결정 Guideline(요건 ① ~ ④)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대응치 결정Guideline	충족여부	판단 근거
① 기간별 급부크기 반영	○	(방안1-1) 가입금액과 동일 근거
② 기간별 기대확률 미반영	○	연환산보험료는 기간별로 동일금액 적용하므로, 기간별 기대확률 미반영
③ 수익성 미반영	○	사업비가 배제된 순보험료는 수익성 미포함. 위험률의 안전할증은 수익성이 아니라 리스크 비용으로 해석 가능
④ 담보별 서로 다른 보험확률은 반영 가능	○	담보별로 연환산 순보험료 수준이 상이

A1 <참고> 보험계약 내 보험금부 간 가중치 반영 여부

방안 1 보험금부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음(보험금부 대응치를 단순합산하는 방식)

◆ 보험금부 = 사망담보 1억 + 장애담보 1억 = 2억

방안 2 보험금부간 위험율 등을 가중치에 반영

◆ 보험금부 = 사망담보 1억 × 사망률 0.01 + 장애담보 1억 × 장애율 0.1 = 0.11억

방안 3 보험담보 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험금부 대응치를 산출

◆ 보험금부 대응치는 담보 간 상관관계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될 수 있음

- 보험담보 A와 B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text{Max}(A, B)$
(예시: 담보 A를 보장받는 기간 동안 담보 B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보험담보 A와 B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A + B$

B 투자금부 대응치

방안 1 해지환급금을 투자금부의 대응치로 간주

- ◆ 2019년 1월 TRG에 따르면 투자요소가 존재한다면 투자 수익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언급
(단, 투자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투자 수익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예, No Claim Bouns))
 - 대다수의 계약(순수 보장형 제외)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투자요소로 정의하므로, 이를 투자 수익 서비스의 대응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 할 수 있음

방안 2 보험금부의 대응치로 가입금액에 대한 담보별 환산 혹은 금부 간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투자금부의 대응치는 환산된 해지환급금 등을 사용

- ◆ 해지환급금을 투자금부의 대응치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 (방안1)과 같은 입장이나,
- ◆ 보험금부 대응치와 통합 시 가중치로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환산가중치를 적용하지는 입장인데, 납입할 (담보별, 적립)보험료를 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에 환산가중치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 시 예상환급율(예상만기환급금 ÷ 총 납입보험료)을 활용
(만기 시 예상환급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보험료적립금에 적립되어 있으나 향후 보험금부를 위한 재원 사용 될 적립보험료'를 투자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방안 3 보장금부의 대응치로 연환산 순보험료를 적용한 경우, 투자금부의 대응치도 연환산 순보험료로 적용

- ◆ 보장금부와 투자금부의 일관성 측면에서 투자금부의 대응치로 연환산 순보험료 적용

C 보험 및 투자 서비스 모두 존재 시 보장수량 대응치

◆ 보험/투자급부 대응치 모두 고려하여 보장수량을 결정

(단, 보험 및 투자급부의 대응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 가정)

- 장점: 상품 포트폴리오별로 합리적/체계적 CSM 상각 기준을 수립이 가능
- 단점: 보험급부 대응치만을 활용하여 보장수량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시스템 구현의 복잡성 증대, 보험급부와 투자급부 간의 합리적 가중치를 산출할 부담과 함께 이를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시할 의무를 가짐(2019년 6월 공개초안 보험급부와 투자급부의 가중치의 산출 및 그 근거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단, 보험 서비스에 비하여 투자 서비스의 제공이 거의 없거나 작은 경우, 보험급부만을 활용하여 보장수량을 결정 가능

(환급율이 낮은 상품은 CSM 상각액에서 투자급부의 구성비가 극히 낮을 가능성 높음)

- 장점: 투자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예시: 관련 재산관리비)을 측정하고 구분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상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피할 수 있음
- 단점: 상품의 속성에 따라 보험급부가 작고 투자급부가 큰 경우, 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보장 및 투자 수익 서비스 규모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음 (특히, 저축성 상품)

Q 1.4.1

일반모형이 적용되는 계약의 CSM 상각 관련 실무 산출방안(사례)은 어떻게 되는가?

◆ 보장 단위

기준서 요구사항	산출 방법론
<p>▣ 2017년 5월 IFRS 17 기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단위 정의: 집합 내 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B119) - 산출방안: 보장수량과 기대보장 듀레이션 을 고려해 산출 	<p>▣ 보장단위 산출 방안</p> <p>(방안1) 주/특 가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PF: 주/특별 가입금액의 단순 합계 · 저축/연금PF: 보험사고 발생시 최대 지급액 (특약 제외)
<p>▣ 2018년 5월 TRG AP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단위 결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별 금부크기 반영 · 기간별 기대확률 미반영 · 수익성 미반영 · 담보별 기대확률 반영 가능 	<p>(방안2) 담보별 환산 가입금액(담보별 보험료를 가중치로 환산 또는 담보별 심도·빈도 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부: 담보별 환산가입금액의 단순 합계 · 투자금부: 환산 해지환급금 혹은 환산 예상 환급액(작으면, 투자금부 제외 가능)
<p>▣ 2019년 6월 IFRS 17 공개초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모형이 적용되는 계약의 보장단위 산출시 보험 및 투자 수익 서비스 고려 가능 	<p>(방안3) 주/특: 연환산 순보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특별(적립담보 포함)연환산 순보험료의 단순합계

기준서 요구사항	산출 방법론
<p>▣ 2017년 5월 IFRS17 기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CSM 상각액: 기말CSM을 당기 제공한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각각 배분 (B119) - 보장 단위 조정: 계약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를 반영하도록 예상 잔여 보장 관련 보장단위를 조정(문단76) 	<p>▣ CSM 당기 상각액 산출방법</p> <p>- 상각률 = $\frac{\text{당기제공 보장단위}}{\text{(당기제공 보장단위 + 미래제공 보장단위)}}$</p> <p>(방안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장단위 제공시점: 기말 ② 당기 제공 보장단위 대상 계약: 기시 보유 계약 ③ 미래 제공 보장단위: 문단76 요건 만족을 위해 기말 보유계약 대상으로 기말시점에 산출 ④ 당기 제공 보장단위: 기시(전기말)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전기말에 산출된 t=1 시점(당기 보고기간 말) 해당 보장단위 산출 (단, 이자비용 미반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20px;"> <p>▣ 화폐시간 가치 반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판단사항(BC282) - 화폐시간 가치 반영시 적용 할인율은 CSM 조정시 사용되는 GoC 최초 인식 할인율 </div>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70C0;">(예시) CSM 상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1월 계약 1월 보장단위) + (1,2월 계약 2월 보장단위) + (1,2,3월 계약 3월 보장단위) · 분모: 분자 + 3월말 잔존 보장단위 현가

기준서 요구사항	산출 방법론
(계속)	<p>(방안2)</p> <p>① 보장단위 제공시점: 기말</p> <p>② 당기 제공 보장단위 대상 계약: 기시 보유 계약</p> <p>③ 미래 제공 보장단위: 문단76 요건 만족을 위해 기말 보유계약 대상으로 기말시점에 산출</p> <p>④ 당기 제공 보장단위 산출시 기시(전기말)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전기말에 산출된 t=1 시점 해당 보장단위 산출(단, 이자비용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CSM 상각률</p> <p>· 분자: (1월 계약 1월 보장단위)</p> $\times (1 + \text{그룹최초할인율} \times 3/12)$ <p>+ (1,2 월 계약 2 월 보장단위)</p> $\times (1 + \text{그룹최초할인율} \times 2/12)$ <p>+ (1,2,3 월 계약 3 월 보장단위)</p> $\times (1 + \text{그룹최초할인율} \times 1/12)$ <p>· 분모: 분자 3월말 잔존 보장단위 현가</p> <p>(방안3) (방안1), (방안2) 중 당기 보장단위 산출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p> <p>· 당기 제공 보장 단위: 당기 중실제 제공된 보장단위 합</p> <p>※ CSM상각은CSM조정(당기 경험조정 및 계리적가정 변동) 이후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기 제공 보장단위는 실제 가입 금액/유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p>

※ 개별 계약의 CSM 상각 스케줄을 건별 가중평균하여 그룹의 보장단위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존재

○ 그룹의 보장단위 = 개별건의 CSM 규모와 듀레이션의 가중평균

○ 다만, 보장단위가 개별건 기준으로 산출되어 기준서상 CSM 측정단위인 그룹과 상충된다는 의견도 존재

Q 1.5

CSM 측정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 회계통합 단위 관련 규정은 2010년 1차 공개초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이슈

- 2010년 1차 공개초안
 - CSM은 Portfolio보다 세분화된 그룹 기준으로 측정
 - 그룹은 유사한 판매시점 및 보장기간 기준으로 결정
- 2013년 2차 공개초안
 - IASB는 Portfolio 정의를 “유사한 위험”과 “함께 관리”로 한정
 - CSM 인식단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판매시점, 보장기간 및 제공 서비스가 유사한 계약들을 통합해 CSM을 인식 가능
- 2016년 Staff Paper
 - 2013년 2차 공개초안과 달리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들을 통합하여 CSM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
 - ① 주요 가정 변경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이 금액 및 시점 관점에서 유사하게 반응하며,
 - ② 유사한 예상 수익성을 가지는 경우
- 2017년 IFRS17 기준서
 - Portfolio는 최소3개 그룹으로 설정
 - CSM 인식 단위는 그룹이며 발행시점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들은 동일그룹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Annual Cohort)

- ◆ **글로벌 보험사 등은 IFRS 17상 Annual Cohort 규정은 보험영업 실질(예시: 상호부조 (Mutualisation)효과)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하지만, IASB는 Annual Cohort규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 Annual Cohort 규정은 기존 원칙 중심의 규정(2010~2016년)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간편법으로 제시
 - 동 규정 폐지 시 보험계약 손익의 평준화 및 보장기간 이후에도 CSM 상각이 발생하는 등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저하 발생
 - 또한, 현 IFRS 17에서는 Annual Cohort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완전한 상호부조 효과가 있는 계약그룹 간 현금흐름 배분을 허용
 - * 상호부조 효과로 인해 Annual Cohort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현금흐름이 산출되는 경우

2. CSM 조정

Q 2.1 투자요소 실무 구분 방안은?

A 2018년 생보협회 실무사례집

◆ 연금 외상품

구분	투자요소
보험금	만기보험금
환급금	해지환급금, 실효환급금, 사망(사고) 당시 해지환급금, 생존급부금
배당금	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비차배당금, 장기유지특별배당금

◆ 연금상품

- 연금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제2보험기간의 유지율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망/탈퇴가 반영되며,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의 형태별로 일정기간 내 (확정/상속형: 연금개시 이후, 종신형: 보증기간 내)의 사망자에게는 일정 해지환급금(사망 당시 준비금)이 지급됨

구분			투자요소
금리 연동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액,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종신형 (보증금액부)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액(보증금액 도달시점까지)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보증금액 도달시점까지만 발생)
	종신형 (보증기간부)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보증기간 내	연금지급액,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보증기간 내에만 발생)
금리확정형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 보증기간부 종신형 상품의 보증기간 이후 연금지급액과 금리확정형 상품의 2보험기간(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액은 생존시에만 지급하므로 생존을 보험사건으로 보아 보험요소로 구분

◆ 그 밖의 투자요소: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계약자 적립금에 기초하여 보험사건과 무관하게 지급하므로 투자요소로 구분함

※ 단, 배당금(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비차배당금, 장기유지특별배당금)의 경우, 2018년 생보협회 실무사례집의 내용과 달리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투자요소로 볼 수 없어 보험요소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음

B 순수 보장형 상품의 투자요소 포함 여부

- ◆ 2019년 4월 TRG 회의 결과, IASB는 투자요소 정의를 변경
 - 기존: 보험사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액
 - 변경: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 ◆ 순수 보장형 상품 및 무해지 상품 등은 투자요소가 존재하지 않음
 - 근거: 개정된 투자요소 정의를 미충족
 - 예시) 보장기간 내 사망시(사망보험금) vs. 보장기간 이후 생존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0)이 상이

※ 단, 그 외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개정된 투자요소 정의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 기존 구축된 IFRS 17 시스템 변경 불필요

C 보험 및 투자서비스 모두 존재 시 보장수량 대응치

- ◆ 사망 진단 등으로 담보가 소멸 된 경우에만 발생 당시 해지환급금(투자요소)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
 - 보험사건 발생 → CI 진단금 등 지급 → BEL 변동 발생
 - 보험사건에 따른 BEL 변동분 → 보험요소로 정의
 - 일반적 경우와 달리, CI 진단금 등의 경우 발생 당시 해지환급금 산출의 어려움이 존재(특히, 실제 발생값 산출 이슈 존재)
 - 계약 소멸(사망, 해지 등)과 동일하게 CI 진단금 등 지급시에도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발생하나, 계약 소멸과 달리 변동분 구분의 어려움 존재
 - ☞ CI/암 진단금 등 지급시 투자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

3. 손상계약 CSM 변동 분석

Q 3.1

손상계약의 후속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 ◆ 손실부담계약에서 P/L상 손실로 인식된 부분을 손실요소로 정의하고 당기 보험수익 인식 대상금액 중 손실요소의 비중만큼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금액은 후속적으로 손실요소 환입으로 당기 손익에 표시
- ◆ 체계적 배분(손실요소 비율)을 통해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중 손실요소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이 필요
 - 기준서에서는 손실요소 비율 산출 원칙만을 기술하여 각사별 산출 방안 수립이 필요
$$\text{※ 손실요소 환입액} = \text{배분대상(Q3.2.1)} \times \frac{\text{손실요소(Q3.1)}}{\text{배분Driver(Q3.2.2)}}$$
- ◆ 또한, 손실요소 체계적 배분을 통해 당기에 P/L로 환입되는 금액 등을 음(-)의 CSM에 반영 후 기말 음(-)의 CSM 확정하는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음(-)의 CSM 변동 분석 프로세스의 수립)
 - 기준서에서는 손상 요소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음

Q 3.2 손실 요소 비율 산출방안은?

Q 3.2.1 체계적 배분 대상이 되는 항목은?

◆ 기준서 문단 5에 따른 체계적 배분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

방안 1

- ①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분
- ② RA 상각액
- ③ 이자비용으로 구성됨(OCI 제외)

방안 2

- ①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분
- ② RA 상각액
- ③ 보험금융수익(비용)(= 시간가치+ OCI)으로 구성됨(기준서 문단 87 정의)

구분	기준서 요구사항	기타 고려사항
①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	발생한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잔여보장 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투자요소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②RA 상각액	위험의 감소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③이자비용	보험금융수익(비용) (방안1)	보험금융수익(비용)은 시간가치와 OCI로 구성 (방안2)

◆ CSM 조정항목과 관련된 모든 이행현금흐름 변동을 체계적 배분의 대상으로 간주함

- ① 예상 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
- ② RA 상각액
- ③ 이자비용
- ④ 당기공시이율 변경
- ⑤ 물량변경
- ⑥ 계리적 가정 변경
- ⑦ 재량효과 변경

☞ 상기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방안1)에 따라 산출도니 결과와 유사할 것이고, 변동 분석 및 실무적 처리가 쉬울 것으로 판단됨

※ 단, 체계적 배분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문단 51과는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예시〉

▣ 예상 현금흐름(최초 할인을 5%, 1차년 시점 할인을 6%)

	0	1	2	3
보험료		300	300	200
보험금_투자요소		300	300	300
보험금_보험요소		100	100	100

- T=0 시점 보험금(투자+보험요소) 현재: 1,089
 BEL 322.2, RA 240, CSM Δ 562.2 (손상계약)

▣ 손실 비율 = 42.29%(562.2/1329)

- 분모: 예상현금흐름 EPV + RA = 1,089 + 240 = 1329
 - 분자: 손실요소 = 562.2

▣ (방안1) T=1 기간 배부대상 항목

- 예상지급보험금(투자요소 포함): $400 \times 42.29\% = 169$ (수익 차감)
 - RA 상각액: (T=1 시점 RA 160 가정): $80 \times 42.29\% = 34$ (수익 차감)
 - 이자비용: (BEL 이자비용 31 가정): $31 \times 42.29\%$ (수익 가산)

▣ (방안2) T=1 기간 배부대상 항목

- 예상지급보험금(투자요소 포함): $400 \times 42.29\% = 169$ (수익 차감)
 - RA 상각액: (T=1 시점 RA 160 가정): $80 \times 42.29\% = 34$ (수익 차감)
 - 이자비용: (BEL 이자비용 31 가정): $31 \times 42.29\%$ (수익 가산)
 - 기시 OCI: (OCI 16 가정) : $16 \times 42.29\% \times (1089/359)$ (수익 가산)
 - 기말 OCI: (OCI 32 가정) : $32 \times 42.29\% \times (733/272)$ (수익 차감)

※ (방안3) 예시는 (Q3.3)에 대한 답변(방안3) 참고

Q 3.2.2

손실요소 배분 Driver는 무엇인가?

- ◆ 손상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미래 현금 유출액 현재EPV; (Expected Present Value)와 RA 합계액을 배분 Driver로 정의

근 거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17 예제8에서 체계적 배분 Driver로 미래현금유출 EPV와 RA 합계액을 활용 · 손실요소 배분은 후속측정시 손실요소를 환입하고, 보험손익에서 환입된 손실 요소를 제거하여 보험수익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V 산출시 적용될 할인율(Q3.2.2) - EPV 산출시 투자요소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Q3.2.3) - 매 시점 손실비율 산출(Q3.2.4) · 매 시점 EPV와 RA값에 따라 손실비율 변동 가능

Q 3.2.3

손실요소비율 산출시 적용될 할인율은?

◆ 최초 인식 할인율 또는 BEL 유효 이자율

방안 1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 할인율

- 손실요소(분자)는 해당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 할인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미래현금 유출액 EPV(분모)도 최초 인식 할인율을 적용

방안 2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BEL 현행 할인율

- 손실요소(분자)는 보험계약마진과 달리 OCI도 손실요소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요소에 AOCI를 포함하게 되어 최초 인식 할인율 적용은 부적절 할 수 있다고 판단

Q 3.2.4

손실요소비율 산출 시 투자요소 반영 여부는?

◆ 미래 현금유출액 현재(EPV) 산출 시 투자요소 반영 및 미반영 방안 모두가 논의되고 있음

방안 1 미래 현금유출액 현재(분모) 산출시 투자요소를 차감하지 않고 손실요소비율을 산출

- 투자요소는 보험 서비스 손익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요소를 차감한 미래현금유출액 EPV 를 산출하여 손실요소비율을 산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매 시점 손실 비율 산출시 미래 현금유출액에서 투자요소를 제외 후 현재화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부담이 큼
 - 또한, 투자요소를 제외한 손실 요소 비율로 P/L 환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손실금액과 체계적 배분액(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단, 최초 손실 금액 산출 시 가정 유지 조건 하)
- 손실요소 비율 산출 시 투자요소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일관성 측면에서 체계적 배분 대상도 투자요소가 제외되지 않은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분으로 정의

방안 2 미래 현금 유출액 현재 산출시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손실요소비율을 산출

- 보험수익 인식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손실요소비율을 산출(단, 체계적 배분 대상에서도 투자요소 차감하여 산출)

Q 3.2.5

손실요소비율 산출 주기는 무엇인가?

방안 1

- 예상현금흐름 산출 주기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손실요소비율 산출 주기를 설정

방안 2 미래 현금 유출액 현가 산출시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손실 요소 비율을 산출

- 손실요소비율의 적용 시점/주기는 중요한 재무정보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환입금액과 장래 수익금액의 매우 일부가 기간 내 차이를 보이는 것 이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Q 3.3

음의CSM 변동분석 실무 적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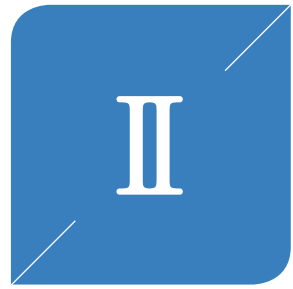
- ◆ 총 6단계의 변동분석 절차를 거쳐 기말 음(-)의 CSM 잔액이 확정됨

근 거	기타 고려사항
1단계: 당기 적용 프로세스 판단	<p>(방안1, 방안2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 CSM 잔액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 손실금액에 신계약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음(-)의 CSM 변동분석 절차 수행
2단계: 기시 손실요소 비율 산출	<p>(방안1, 방안2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에서 산출한 기시 손실금액과 신계약 손실금액 합계액(분자)을 기시 미래 현금유출 EPV와 기시 RA 합계액(분모)으로 나누어 기시 손실요소 비율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분기 결산인 경우 신계약 관련 미래 현금 유출 EPV와 RA를 당기 말 가중평균 최초 할인율을 적용해 현가화하여 손실비율 산출
3단계: 체계적 배분에 따른 손실요소 환입액 산출	<p>(방안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손실 환입액 = 당기 체계적 배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에서 산출한 손실요소 비율 · 체계적 배분 대상은 예상 현금흐름 당기 Release분 (투자요소 포함) + RA 상각액 + 이자비용으로 구성 · 환입액은 보험서비스 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단, 환입한도는 기시 손실요소) <p>(방안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손실 환입액(OCI제외) = 당기 체계적 배분 대상 중 OCI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에서 산출한 손실요소 비율 - 당기 손실 환입액(OCI) = 당기 체계적 배분 대상 중 O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에서 산출한 손실요소 비율 × 현금유출금액 ÷ 현금순유출금액 · 체계적 배분 대상은 예상 현금흐름 당기Release분 (투자요소 포함) + RA 상각액 + 이자비용 + OCI로 구성 · 환입액은 보험서비스 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단, 환입한도는 기시 손실요소)

근 거	기타 고려사항
<p>4단계: 예상 실제 차이 산출</p>	<p>(방안1, 방안2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과 실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예상 실제 차이 금액을 산출 · 현금흐름 예실차 특성 *미래 서비스 관련 여부 등을 판단하여 P/L 또는 CSM(아래5단계)으로 처리
<p>5단계: 비체계적 배분에 따른 손실요소 환입</p>	<p>(방안1, 방안2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실차 중 CSM 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전액 손실요소 환입 처리 · 단, 환입한도는 체계적 배분 후 손실요소 잔액으로 한정 - 환입한도 초과분 발생시 양(+) 의 CSM 항목으로 계상하고 이후 양(+) 의CSM 변동분석 프로세스를 적용
<p>6단계: 잔여 손실금액 산출</p>	<p>(방안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 전 손실잔액 = 1단계 기시 손실잔액 + 3단계/4단계 체계적 · 비체계적 환입액 <p>(방안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 전 손실잔액 = 1단계 기시 손실잔액 - 3단계/4단계 체계적 · 비체계적 환입액 중 AOCI + 3단계/4단계 체계적 · 비체계적 환입액 중 AOCI 제외 부분 + 3단계/4단계 체계적 · 비체계적 환입액 중 기말 AOCI

◆ (방안3)의 손실그룹 관련 회계처리

근 거	기타 고려사항
1단계: 최초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계약 최초측정 CSM이 음수인 경우 즉시 손실 인식하고 CSM 0처리 - 손실요소비율 산출하여 이행현금흐름을 손실요소와 손실요소 이외 부분으로 구분 $\text{손실요소비율} = \text{손실요소} \div (\text{PV of OutCF} + \text{RA})$
2단계: 가중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가중평균 최초할인율을 적용해 손실비율 재산출(생략 가능)
3단계: 후속측정 손실 요소 환입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현금흐름 반영한 이행현금흐름까지의 모든 변동에 손실요소비율을 적용 - 손실요소 해당 변동분은 모두 손실(환입)처리, 손실요소 이외의 부분은 성격에 따라 보험수익, CSM 조정, 이자비용 처리
4단계: CSM 관련 후속 손실 또는 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처리전CSM = 기시CSM + 이자 + CSM조정(보험료차이, 손실요소 이외 신계약비, 투자요소 예실차, 물량차이, 계리적가정 변경, 재량효과 등) - 상각전CSM = $\text{Max}(0, \text{손실처리전CSM} - \text{재량효과 반영 후 손실요소 FCF})$ - CSM관련후속 손실 = 상각전CSM - 손실처리전CSM
5단계: 손실요소 비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요소비율 = $(\text{재량효과 반영 후 손실요소FCF} + \text{CSM 관련 후속손실}) \div (\text{재량효과 반영 후 PV of OutCF} + \text{RA})$
6단계: 기말평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말원가, 시가 평가 후 손실요소비율 적용



발생사고부채

II

발생사고부채

4. 정의

Q 4.1

IFRS 17에서 발생사고부채의 정의는 무엇인가?

- ◆ **(발생사고부채의 정의)** 결산일 현재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부채
- ◆ **발생사고부채 적립대상의 요건**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IFRS 17의 발생사고부채(Liabilities for Incurred Claims)라는 용어를 살펴 보면,
 - ‘Incurred’는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하였음’,
 - ‘Claims’는 ‘보험계약에서 부여한 지급청구권’을 의미하여,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지급요구권에 관한 부채(지급의무액)
 - *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에서 알 수 있듯이, Reporting(보험계약자의 청구를 회사에 접수)여부는 부채포함여부에 영향이 없음. 즉 모두 부채로 적립하여 IBNR과 OS(청구된 개별추산액) 모두 발생사고부채임
 - 지급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상 약정한 지급사유’이며, 이것은 회계상 인식의 ‘중요한 사건’을 말함
 - * 회계상 인식(Recognition)은 특정 거래/사고에 대하여 비용(혹은 수익)으로 재무제표(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기준시점(예시: 거래일/사고발생일)
 - ‘지급사유’는 보험사에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예시: 교통사고, 암진단, 계약해지 등)으로서 보험계약 조건으로 미리 정해져있는데,
 - *보험계약조건: 주요 약관의 “보상범위, 면책 및 실효/해지 등”을 말함
 - 지급사유로 인한 청구권은 ‘지급사유발생시점’에 생긴 것으로 보고, 회계상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이 지급사유발생시점으로 함

◆ 적립대상 그 다음 요건은 ‘결산일까지 지급의무의 미이행’으로 ‘결산일 이후 지급의무가 해소될 것’을 요건으로 함

- IFRS 17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라는 용어를 살펴 보면,
 - ‘Fulfillment(이행)’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조건대로 수행’,
 - ‘Cash Flow’는 ‘발생될 미래 현금흐름’을 의미하는데,

〈참고〉 IFRS17 기준서 이행현금흐름 구성요소의 수식화

$$BEL_0 = E\left[\sum_{t=1}^N \frac{(CF_t^{Out} - CF_t^{In})}{(1 + r(t))^t}\right], RA = U(\overline{BEL}) - U(BEL)$$

▣ 수식기호의 설명

- ① CF_t^{Out} : t시점 유출현금흐름
- ② CF_t^{In} : t시점 유입현금흐름
- ③ $r(t)$: EIR로 표시된 t시점의 할인율
- ④ \overline{BEL} : 확률변수인 BEL(최선추정치)에 해당하는 확정치
- ⑤ $U()$: 효용함수

- ‘결산일 이후 계약상 지급의무의 해소’는 위에서 말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현금흐름 중 ‘지급’과 주로 연관됨
 - 예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의무해당액과 그 지급시점을 추정할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립액을 산출하고
 - (할인율 등 변동효과가 없다면) 지급 시까지 할인율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의무는 해소됨

- 다만, ‘지급의무의 해소 요건’ 지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실효비금)실효는 보험계약자가 부활옵션을 행사함에 의해서도 지급의무가 해소될 수 있으며,
 - (계약자배당 관련)(결산일까지 적립된)이미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에서 결산일 현재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환입할 수 있음
 - *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은 당기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입할 수 있지만 이는 잔여보장부채에 관한 평가결과에 의한 환입과는 다름

Q 4.2

발생사고부채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 ◆ '중요한 사건'은 보험계약 조건상 '지급사유'이며, 회계상 부채로 인식함에 있어서 시간적 기준(언제 발생사고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 보험계약 조건(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중요한 사건'이며,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 의무는 주로 사고원인이 이에 해당하며 투자요소에 대한 환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행위와 관련되고, 계약자 배당 의무는 배당조건 성립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장 의무를 가지는데,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이 이뤄지기 위해 '원인사고(Trigger)'와 '지급조건'이 모두 성립되고 충족되어야 함

〈참고〉

- ▣ 약관내용: ~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은 때~
- ▣ 약관내용: ~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은 때~
 - ① ○○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위험의 사고원인(원인사고)
 - ② ○○을 받은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완성하는 조건(지급조건)

-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상실·중지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 조건상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예시: 가입 취소한 보장에 관한 보험료 환급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혹은 투자요소 관련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됨
 - * 위에서 말한 환급의무는 보험계약 조건 혹은 보험계약자의 행위(예시: 임의해지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함
-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중지될 때, 보험계약의 계속유지를 전제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 중 환급의무 발생분(이자 발생 시 이자도 포함. 예시: 실효비금 등)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예시: 실효 중 부리이율, 부활옵션 등

-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 중 환급의무 발생분(이자 발생 시 이자도 포함. 예시: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예시: 만기 후 부리이율 등

- 보험계약 조건상 불필요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때, 납입된 보험료 중 환급의무 발생분(이자 발생 시 이자도 포함)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예시: 지연이자 등

- 보험계약 조건상 ‘계약자 배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조건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는 Q4.8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선 ‘배당조건의 성립’이 중요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는 선에 마무리하고자 함

◆ **‘중요한 사건’**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인식할 시점에 관한 기준, 즉 **‘발생사고부채로 인식할 시간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급의무의 종류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음

-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는 원인사고 발생시점이 시간적 기준임
 - ‘원인사고 및 지급조건 중 지급사유(발생일)의 선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있어서 기간대응 - 원인사고
 - * 원인사고 발생시점의 근거: 약관, 원인사고 발생이 보험기간 중에 이뤄져야 함. 보험기간 종료 후 지급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됨
 - ‘과거 서비스, 당기 서비스와 미래 서비스의 구분’: 공시에 있어서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 제공
 - * 변동요인 분석: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의 증감, 전년도 결산 시 회사의 추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보여주며, 동시에 발생사고부채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 중 당기 서비스 관련 발생분을 구분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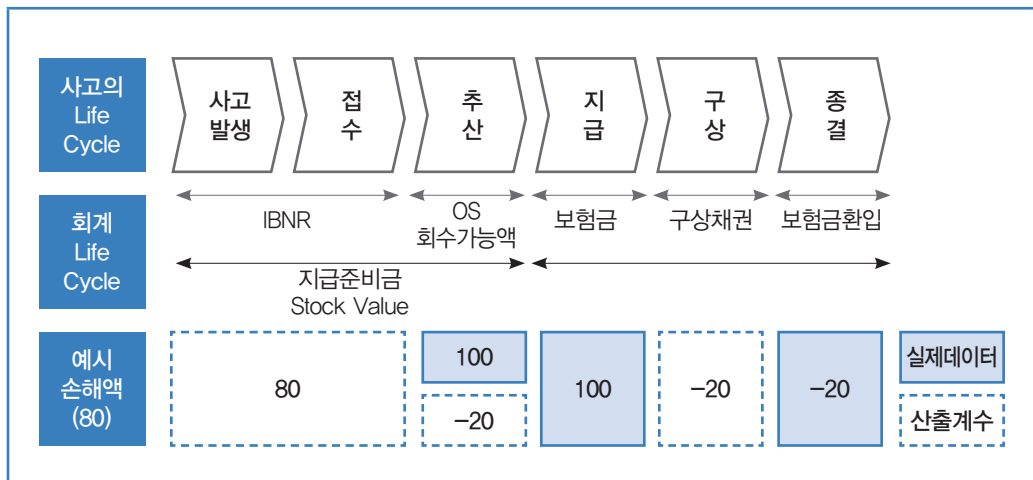
- 투자요소에 대한 환급의무는 환급의무 발생시점이 시간적 기준, 계약상 권리-의무와 연계되어 있음

항 목	시간적 기준	설 명
(사고 시) 책임준비금	원인사고 발생시점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하여야 하면, 보험금과 함께 (적립된)책임준비금을 함께 지급시 사고발생 당시 해당계약의 (순보식)책임준비금
실효비금	계약 실효일	· 해지환급금: 해당계약의 실효시점 해지환급금 · 계약자배당액: 해당계약이 유배당계약인 경우, 실효시점 현재 계약에 귀속된 배당액.
(미지급) 만기환급금	계약 만기일	결산일 현재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못해 지급/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금액
미환급 보험료	미환급보험료 발생일 (예시 : 배서기준일과 배서신청일 중 늦은 날)	기납입한 보험료 중 향후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다(초과)/중복로 인하여 계약자에 환급하여야 보험료 중 미환급액

Q 4.3

발생사고부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 발생사고부채는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고피해자 등 포함)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금액)이며, 크게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 투자요소에 대한 환급의무, 배당부 계약에서의 계약자 배당의무로 나뉘짐
- ◆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는 보험금과 손해조사비(사고 처리에 사용될 부대비용)로 비용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 IFRS 17 재무제표는 BEL(확률가중평균, 최선추정)과 RA(위험조정)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고, 변동요인분석 등 공시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행과 유사한 계정과목별 분석(규모변동, 구성비, 소요기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 재무제표 표시에는 비용 성격에 따른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보험사고 보장의무를 시간경과에 따른 현행 계정과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IBNR 등 계정과목의 Life Cycle을 파악할 수 있음
 - * 계정과목별 변동성 분석(건수/금액의 규모, 구성비, 소요기간)은 현금흐름 추정에 있어서 적정성 검증(사전/사후 모두)에 주로 활용됨



- ‘손해조사비’는 보험계약자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반적으로 사고접수/개별추산을 수행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하는 시점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됨,

- ‘업무관리 및 손익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현행 계정과목이 유지(일부 수정 등)될 필요가 있으나, IFRS 17 기준의 재무제표는 BEL과 RA로 구성됨(변동요인분석에 관한 공시는 계정과목별 변동분석이 필요)

* 현행 계정과목과 향후 IFRS 17 계정과목의 비교는 Q4.4부터 Q4.7에서 다룸

- ‘보장의무’에 대한 부채는 현금흐름에 기초한 확률가중평균인 BEL과 변동성에 관한 보상인 RA로 구성되나, 이것은 보험금, 그 시점(발생, 지급) 과 할인율(부리이율)만으로 이뤄지므로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확인/검증하기 위해선 Data(IBNR, OS, 보험금 등)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사고의 증감 등 손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선 계정과목별 관리와 분석이 필요

- 보험사는 손해사정조직의 업무관리 및 손해상황 파악을 위하여, 현행 IBNR 및 OS에 관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필요함

* 공시자료 중 변동요인분석에는 정교한 분석을 위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현행 계정과목별 변화를 기록한 데이터를 필요로 함

- ◆ **투자요소에 대한 환급의무는 보험손익과는 상관없이, 투자요소의 유입, 그에 대한 기간별 금융비용 발생 및 투자요소의 환급으로 비용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요소는 IBNR효과(지급 의무의 발생을 뒤늦게 인지)가 존재하지 않아 현금흐름 추정상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 ‘투자요소에 대한 환급의무’는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의무 발생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급금은 계약 조건과 거래내역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여 계산 가능함

* 투자요소의 정의는 IFRS 17 용어의 정의에 적용함

- 보험약관은 발생조건, 그 지급의무의 발생 · 소멸 시점과 환급시 지급할 이자계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 환급의무의 발생조건에 따라 환급금 명칭이 주로 정하여 짐

항 목	설 명
(사고 시) 책임준비금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하여야 하면, 보험금과 함께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함께 지급 시 사고발생 당시 해당계약의 (순보식)책임준비금
실효비금	· 해지환급금: 해당계약의 실효시점 해지환급금 · 계약자배당액: 해당계약이 유배당계약인 경우, 실효시점 현재 계약에 귀속된 배당액
(미지급) 만기환급금	결산일 현재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못해 지급/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금액
미환급 보험료	기납입한 보험료 중 향후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다(초과)/중복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환급하여야 보험료 중 미환급액

- 실무적으로 ‘계약관리시스템’상의 제약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의 환급의무에 관한 금액은 건별로 계산 가능함(원금과 이자를 분리 가능)
 - 위의 계약조건과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계약관리시스템 하에서 환급의무 발생조건 충족여부와 환급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
 - 이런 상황하에선 현금흐름 추정에서 불확실성 요소가 미미함과 비교하여, 불확실성의 측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과도하다면 투자요소 환급의무에 관한 RA는 불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함
- ◆ **배당부계약의 계약자 배당의무**는 계약 조건(약관)에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배당부 이익, 배당재원)이 생기면 발생하는데, 약관에는 보험사가 배당의무와 배당재원의 계산방식(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을 명시함. 투자요소 환급의무와 마찬가지로 IBNR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현금흐름 추정상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 보험법규에 따른 계약자 배당의무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음

항 목	설 명
계약자배당 (준비금)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배당부 계약(계정)의 잉여금을 배당 대상계약에 귀속시킨(시킬) 계약자 배당액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배당부 계약(계정)의 잉여금을, 배당 대상계약에 귀속 없이 총액으로 배당지급을 위해 관리되는 자원, 적립 후 5년 이내 배당 대상계약에 배당하여야 함
계약자 손실보전 (준비금)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배당부 계약(계정)의 잉여금을, 배당 대상계약에 귀속 없이 총액으로 배당 대상계약의 손실발생 시 손실충당에 사용하도록 할당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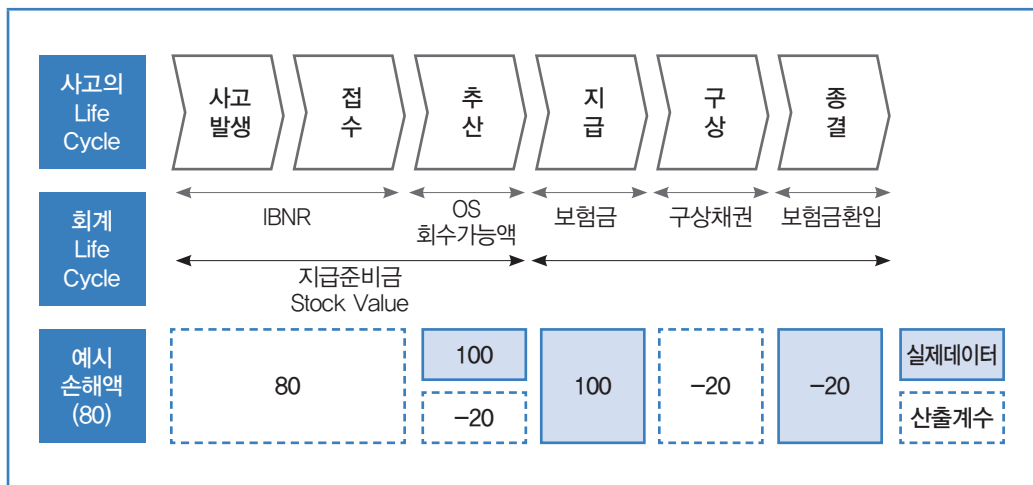
- 계약자 배당의무는 계약 조건에 배당재원과 배당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당대상계약의 인식과정에서 IBNR효과가 전혀 없어서 현금흐름상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잔여보장부채의 예상배당재원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 배당재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적립된 배당준비금 중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을 환입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음

* 이에 관한 사항은 Q4.8에서 다루기로 함

Q 4.4

보험사고 보장의무에서 IFRS 17이 시행되면 현행요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 보장의무에 대하여 현금흐름 추정에 기초하여 최선추정부채(BEL)과 비금융위험에 관한 위험조정(RA)으로 명시적 구분을 하여 부채를 적립함에 따라, 구상채권 및 회수가능액 등 업무 처리흐름의 중간과정에서 설정된 계정과목(구상채권은 자산, 회수가능액은 부채의 차감액)은 소멸될 수 있음. *그럼에도 기준서에서 제시한 일부 유형은 그렇지 않음. 그러나, IFRS 17 시행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현행 규정도 있음
- ◆ 현금흐름에 기초한 발생사고부채 평가의 도입으로 구상채권, 회수가능금액 등의 소멸



- ◆ 그 외에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에 대한 반영방식(PD-LGD), 일반손해보험에서 미지급보험금의 발생사고부채로 회계처리

Q 4.5

보험사고 보장의무에서 IFRS 17이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 ◆ 현금흐름 추정에 내재된 최선추정과 불확실성(변동성)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평가함에 따라 공분산효과 등에 관한 계리적 검토가 중요해짐. 시간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부채규모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게 됨. 그리고 변동요인분석에 대한 회사의 공시 의무가 생겼음
- ◆ 현금흐름에 내재된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RA 및 공분산효과의 반영(BEL과 RA는 명시적으로 구분)
- ◆ 시간가치 반영(시가평가,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최선추정)
- ◆ 변동요인분석에 관한 공시

구분	항목	세부내용	총량추산 포함여부	IFRS 17 존속여부
사고 손해	비금융 위험조정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지급의무발생)하였으나, 개별 추산의 미적립건(미보고 + 접수 · 보고 후 조사 중)	포함	존속
	개별추산액 (Case Reserve)	· OS(손): 생보의 아래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함 · 청구미지급/사고미지급(생): 추산 후 미지급 중 아래건 제외 · 사고분할비금(생): 사고발생 후 정례적 지급형태 현재 할인적립을 이유로 따로 식별되고 관리됨 · 소송비금(생): 소송이 제기된 건(고액건, 대형건)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함	포함	존속
	회수가능액 (대위권에 근거) 향후 보험금 지급 후 회수예상액		포함	IBNR에 포함
	구상채권 (대위권에 근거) 보험금 지급건 중 회수예상액		포함	IBNR에 포함
부대 비용	장래 손해조사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향후조사, 손해사정, 지급/구상 등 처리에 소요될(사고손해의) 부대비용	별도 산출	기존과 동일
금융 비용	시간가치 할인액	보험사고발생에서 지급(구상포함)까지의 기간 중 결산일 현재 잔여기간에 관한 시간가치 할인액	제외	신규도입
	비금융 위험조정	지급할 보험금의 추정상 불확실성(금액, 시점) 반영분	포함	

Q 4.6

투자요소 환급의무에서 IFRS 17이 시행되면 현행요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 투자요소에 대하여 시가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행 원가법이 시가평가와 중요성 관점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감사인과 협의를 거쳐)현행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음
- ◆ 현행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적용가능 근거 마련(원가법과 비교할 시가평가, 중요성 기준)(Q5.7~5.9 참조)
- ◆ 재무제표상 표시에 관한 고려: 투자요소가 보험서비스와 분리되어 표시
- ◆ 변동요인분석에 관한 공시

Q 4.7

계약자 배당의무에서 IFRS 17에서 발생사고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 ◆ 배당준비금은 계약조건상 이미 발생한 배당부계약의 이익에 대한 보험사의 배당 의무와 관련되는데,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배당부계약의 이익이므로 발생사고부채의 요건을 부합함. 다만,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범위에서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당부계약의 이익이 보험사에 귀속될 수는 없으나, 유보금(혹은 총당금)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잔여보장부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방안 1

- ◆ **현행 보험법규에 운영되는 세 가지(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 모두 발생사고부채로 인정하고, 이 중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부계약에서 생긴 당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입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자 배당 의무라 함은 ‘배당부계약’에서 ‘계약자 배당조건이 성립(배당재원 발생 등)’한 경우 그 이익을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함
 - 일단, 계약자 배당재원이 되면,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손실발생 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을 뿐이며 잔여보장으로서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므로 잔여보장부채로 볼 필요는 없음. 특히, 손실보전과 관련 총액으로 관리하고 개별계약자별로 할당하지 않은 준비금은 유보금/총당금으로서의 성격이 있을 뿐 보험사에 귀속될 수 없음
 - 계약자 배당재원 산출의 시작점이 되는 ‘당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은 ‘Incurred(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라는 발생사고부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함

방안 2

- ◆ **배당부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미 적립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에서(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때) 손실보전될 수 있음. 더구나, 주주지분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5년 동안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될 금액에서 사후적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 그러므로 환입가능한 배당준비금은 잔여보장부채와 현금흐름상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 특히, 보험사의 상품 특성(계약조건상 손실 예상 등) 및 전산시스템 등에 따라 환입가능한 배당준비금은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일 수 있음**
- ◆ 당기 발생손실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예상 등으로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등에서 환입조건의 발생가능성’등을 이유로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을 잔여보장부채로 처리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환입의 범위는(이미 주주지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당기 손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사고부채로 처리할 때와 동일함

Q 4.8

실효비금의 처리는? (‘발생사고부채’ Vs. ‘잔여보장부채’)

- ◆ 향후 부활옵션 행사로 인한 효과는 잔여보장부채에 이미 포함. 실효비금의 처리는 ‘(실효계약의) 이미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임
- ◆ (정상상태)보유계약의 현금흐름 산출에 적용되는 유지율의 산출식을 검토하면, (현재)실효계약에 향후 부활옵션을 행사하는 효과(부활된 계약의 부활 이후 순현금흐름)는 (결산일 현재)잔여보장부채에 이미 반영
 - 적용된 산출식상 유지율(정의)때문에, 보유계약의 현금흐름에는 ‘결산일 현재에는 실효상태이나 향후 부활하는 효과’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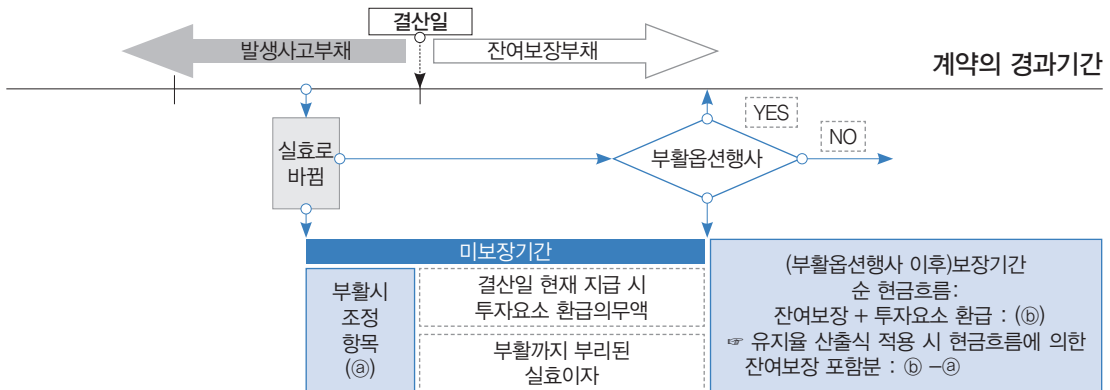
<참고> 유지율 산출식상 유지율의 정의

$$Inf_Ratio_{n+1} = (Inf_V_{n+1} + R_V_{n+1}) / Inf_V_n$$

□ 수식기호의 설명

- ① Inf_Ratio_{n+1} : n+1시점의 유지율
- ② Inf_V_{n+1} : n+1시점 정상상태 계약(계수로 건수, 보험료 모두 가능)
- ③ R_V_{n+1} : n+1시점 부활한 계약(계수로 건수, 보험료 모두 가능)

- ‘결산일 현재에는 실효상태이나 향후 부활하는 효과’는 부활될 계약의 부활이후 현금흐름만(㉑-㉒)포함, 그 계약의 실효이전분(㉒)은 제외



방안 1 발생사고부채로 분류

- ◆ **결산일 현재, 실효시점부터 보험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을 잃어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계약의 투자요소를 환급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발생사고부채로의 처리 요건을 충족함**
 - 실효 중 대다수가 (부활없이) 지급(환급)되는 경제적 사실에 부합
 - 유지율 가정의 특성(산출식에 부활건을 반영)으로 인하여, 향후 부활될 계약의 (부활 이후) 현금흐름은 이미 잔여보장부채에 포함되어 부활효과 누락은 없음
 - *잔여보장과 별도로 회계처리 가능함
 - (그러므로, 결산일현재) 실효비금은 계약상 남아있는 보장과 무관함

방안 2 잔여보장부채로 분류

- ◆ **실효된 계약에는 부활옵션이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부활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향후 보장서비스를 회복하고 있다 점을 감안하여, '잔여보장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실효된 계약의 잔여보장부채 금액은 중요성의 원칙을 고려, 현행 실효비금과 동일하게 평가함.**
 - 2019년 4월 TRG에 따르면, 만료하지 않은 보장기간에 관련된 현금흐름은 (예시: 계약의 예상 부활) 잔여보장부채 일부임을 제시

〈참고〉 2019년 4월 TRG AP2 기타이슈 S111

Providing detailed application guidance for specific transactions is not within the remit of the TRG. However, stakeholders may find the following references helpful in considering similar transactions:

- (b) the definition of a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in Appendix A of IFRS 17. Cash flows related to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coverage period, such as the expected reinstatement of contracts, are part of the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

Q 4.9

발생사고부채로서 납입면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위험보장으로 판단하여**(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장 서비스를 제공), **결산일 현재 납입면제 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지급의무(잔여분)를 발생사고부채로 함**. 다만, 그 **지급의무(잔여분)를 일시에 모두 발생사고부채로 적립한 후 각 납입시점마다 차감하도록 처리할 수 있고, ‘납면 후 유지 계약’만 각 납입시점마다 순차적으로 발생사고로서 비용을 인식하도록 할 수도 있음**
- ◆ 보험계약 조건상 ‘**납입면제**’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개념적으로 **부채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봄
 - ‘납입면제(보장서비스)’는 ‘보험위험에 관한 보장(서비스)’에 해당하며, 보험사로 위험이전의 대가(보험료)로 받음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은 보험사고(보험위험을 보장하는)에 해당하며, 보상금액은 ‘해당 사유 발생이후 납입의무가 남은 보험료’임
 - 계약자가 보험위험 이전 대가를 지불하는 등 IFRS 17 기준서상 보험위험에 관한 이전거래(계약)에 부합함
 - **납입면제 사유 발생이 부채 인식에서 ‘중요한 사건’인 것은 사고 발생이후 계약상 약정된 보장(보험료납입면제) 서비스를 제공할 보험사의 의무는 없어지고, 사유 발생 시부터 보험료 납입의무를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임**
- * 납입면제 사유 발생은 그 시점이후 계약상 의무의 내용(부채의 내용)을 발생·변화시킴. 납입면제는 사고발생 시 소멸하는 보장, 보험금 지급의무
- 다만, ‘중요한 사건’인 납입면제에 대하여 ‘**발생요건**’ 및 ‘**발생시점**’을 보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실무적용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일괄인식) '납입면제를 초래하는 사고의 발생'을 '중요한 사건'의 발생으로 보며, 이를 '보험사 납입의무'에 대한 인식요건으로 보는 의견임. 이때 인식하는 발생사고부채는 남아있는 향후 납입보험료의 전체이며, '일괄인식'하는 것임
- (분할인식) '납입면제를 초래하는 사고의 발생'과 함께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하도록 계약유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중요한 사건'의 발생으로 보는 의견인데, 이 경우 매 보험료납입시점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는 것으로 남아있는 향후 납입보험료를 매 납입시점마다 '분할인식'하는 것임

*사망 등으로 보험계약 탈퇴사유 발생 시 보험료납입의무가 소멸됨을 중시

방안 1 일괄인식

- ◆ 보험사고 발생 시 '잔여보험료'를 발생사고부채로 일시에 인식하고, 매 납입시점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방안 2 분할인식

- ◆ 보험사고 발생건의 매 납입시점 도래 시 '해당보험료'를 발생사고부채로 인식하고 납입처리하는 방식인데, 납입 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납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임
- ◆ 일괄인식과 분할인식 사이에 재무적 영향(부채규모 차이)은 없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에 기초하므로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납입면제의 현금흐름 속성상 차이가 발생할 수 없음

· 두 인식은 인식시점과 인식범위에선 차이가 있으나

- 일괄인식: 사고발생시점, (인식시점)향후 납입될 보험료 전체(인식범위)
- 분할인식: 보험료납입시점(인식시점), 해당시점의 납입보험료(인식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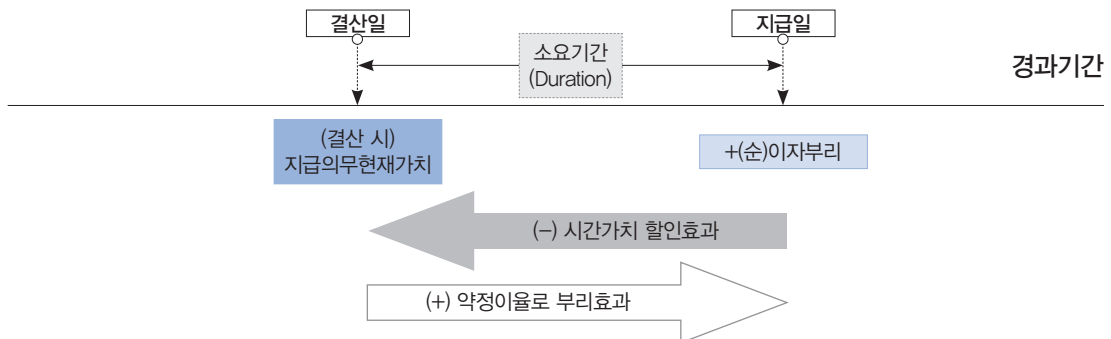
- 발생사고부채의 평가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이뤄지는데, 현금유입(보험료)과 현금유출(보험금)이 동시에 일어나면 순현금흐름(유출-유입)은 언제나 0이므로 부채는 동일함
 - 발생사고부채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을 현금흐름요소로 보고, 납입면제 발생에도 ‘보험료’를 잔여보장부채의 현금흐름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만 다를 뿐 합산한 효과는 동일함
 - 다만, 보험금은 발생사고부채와 관련하여 회계 계정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잔여보장부채와 관련하여 회계 계정 처리되어야 함(순현금흐름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보험금/보험료 계정으로 기표해야 함)
- ◆ (시스템 개발 시 고려) 앞에서 설명한 사항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의 범위(발생요건, 유출과 유입의 분리여부)를 결정하고 회계시스템 내에서의 처리와도 부합하도록 해야 함

5. 현금흐름의 추정

Q 5.1

IFRS 17에서 발생사고부채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 ◆ 지급의무의 종류별로 다소 달라지는 면이 있으나, 지급의무의 발생시점과 해소시점(두 시점 사이의 기간이 이자부리기간임)과 금액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발생사고부채 평가 시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임. 또한, 현금흐름에 불확실성/변동성(비금융위험)이 있다면 이를 위험조정(RA)으로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할인율과 이자부리(이자율)는 시가평가 산출과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6. 현재가치평가 할인율'에서 다루며, 여기에선 직접적으로 현금흐름의 추정에 관한 것만을 다룸
- ◆ 발생사고부채의 시가평가라 함은 현금흐름의 추정과 할인율의 적용으로 나뉘지며, 현금흐름 추정은 지급의무의 시점(발생, 소멸), 지급의무 금액규모, 지급의무에서 발생하는 부담 이자로 구성됨
 - 발생사고부채 시가평가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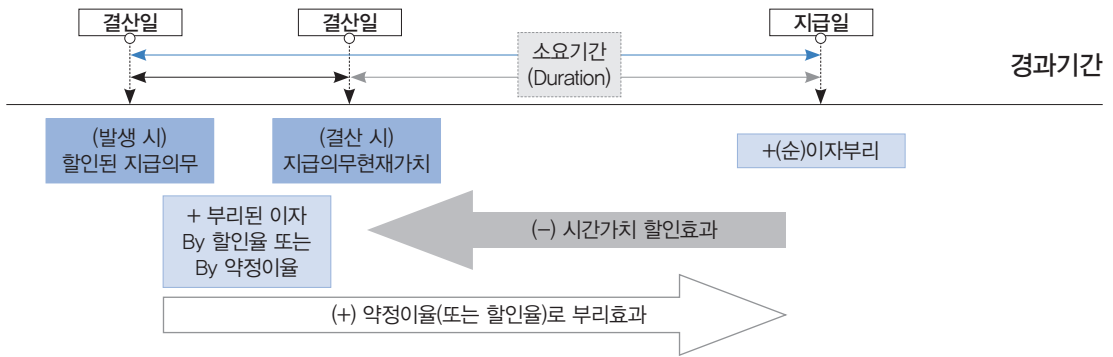
* (결산 시)지급의무 현재가치: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해당액 (발생원금 + 결산일까지 부리된 이자)

* 소요기간: 결산일에서 지급일까지의 기간(Time Lag)으로서 부리기간, 할인기간

* 시간가치할인: '무위험수익률 + 유동성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시간가치

* 지급일까지 이자부리: 약정이율의 존재 시 약정이율로 부리, 부재 시 시간할인율로 부리

- 발생사고부채의 현금흐름 추정에는 일단, 지급의무의 시점, 금액규모 및 계약조건상 있다면 부담이자를 주로 다루기로 하며, 구성요소와 시간경과에 따른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할인율에 관한 사항은 “6.현재가치평가 할인율”에서 다루기로 함)
- 발생사고부채의 발생 → 결산 → 지급까지 금액의 변동



〈설명〉 현재가치 평가에 있어서 경과기간별 변화

지급될 금액(지급시점: 1,000), 발생시점(2019년 초), 지급시점(2020년 말)을 추정, 결산일 현재(2019년 말) 부리이자(할인율 5%)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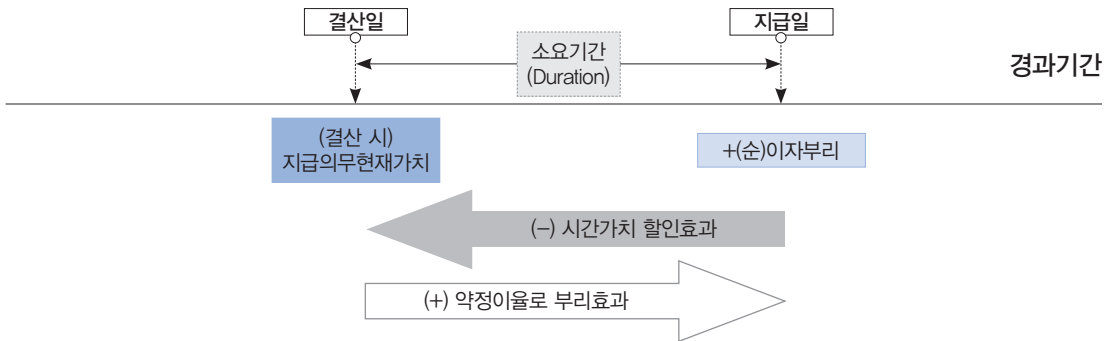
■ 시점별 금액 변동과 변동요인

- ① 발생시점: 지급일 지급예상액의 현재가치 907 (= 1,000 ÷ 1.05²)
- ② 결산일: 지급의무의 현재가치 952 (= 1,000 ÷ 1.05² × 1.05) 이자비용 45
- ③ 지급일: 지급액 1,000 (= 1,000 ÷ 1.05² × 1.05²) 이자비용 48 (= 952 × 0.05)

① 발생사고부채 발생 시 회계처리			
차) 보험서비스비용	907	대) 발생사고부채	907
② 결산일 회계처리			
차) 보험금융비용	45	대) 발생사고부채	45
③ 지급일 회계처리			
차) 보험금융비용	48	대) 발생사고부채	48
차) 발생사고부채	1000	대) 현금(예시: 보험금)	1000

- 발생사고부채 중 투자요소의 환급의무는 대부분 계약조건상 환급이 이뤄질 때까지 부리할 약정이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시점까지 부리이자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함

- ◆ 발생사고부채의 현금흐름 추정에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발생사고부채의 종류(보장 의무, 환급 의무, 배당 의무)에 따라 불확실성의 정도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음
 - 보장의무는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금액 및 지급 시점의 세 가지 모두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나,
 - 환급의무는 지급 시점에 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결산일 현재 지급 금액의 '지급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약정이율과 할인율의 차이'에 그치므로, 두 요소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 배당의무는 계약자배당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까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보험사가 적립된 배당준비금에 대하여 지급까지 약정이율로 부리할 의무를 가지는 등의 경제적 의무가 없고, 그에 해당하는 자산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면 됨
- ◆ 발생사고부채 중 보장의무에 대하여 현금흐름 추정상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최선추정 부채(BEL)와 구별하여, 위험조정(RA)으로 별도의 부채로 적립하는 것이 기준서 취지에 부합함
 - 해외 계리연구에서 보장의무 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Mack방식, SCLM 등 기법이 이런 양상을 설명함

Q 5.2

지급의무(발생사고부채의 종류별)의 발생시점은 무엇인가?

- ◆ 보장의무의 발생시점은 약관 등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인사고발생시점’을 발생사고부채로서 인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회계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함. 다만, 계약조건상 ‘원인사고발생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발생일 등 보험청구권 발생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함. 환급의무는 계약조건상 환급의무 발생시점을 명시하고 있음. 배당의무는 계약조건 및 보험법규에 따른 배당업무의 대상이 되는 배당부 이익의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음
- ◆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의무는 대체로 지급의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사고(원인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계약조건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인사고발생시점’을 발생사고부채를 비용 인식하는 기준점(중요한 사건)으로 함. 다만, 보험상품(계약)의 특성에 따라 원인사고가 아닌 ‘청구권 발생일’을 인식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
 - 일반적인 보험약관은 보험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인사유(Trigger)-지급조건’의 발생구조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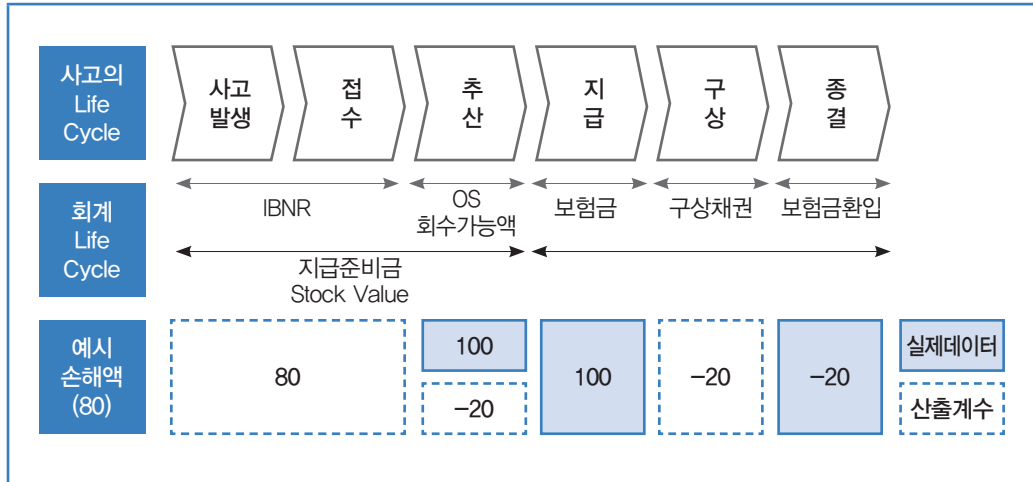
〈참고〉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에 관한 특별약관

- ▣ 약관내용: ~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은 때~
- ▣ 약관내용: ~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은 때~
 - ① ○○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위험의 사고원인(원인사고)
 - ② ○○을 받은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완성하는 조건(지급조건)

*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 원인사고의 발생이 보험기간 중이면 됨

* 지급조건을 완성하는 결과가 보험기간 종료 후 나오더라도 보험금 지급가능함
 사례)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계속된 치료비와 장해판정은 보험금 지급함

- ‘원인사고 vs. 지급조건’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를 인식해야 할 시점을 결정하는 것, 아래 그림에서 사고발생이라고 인지할 시점을 정하는 것임



- * 원인사고 발생(교통사고 발생)이면 위의 사고발생을 교통사고시에 인식
- * 지급조건 완성(장해진단)이면 위의 사고발생을 의사진단서가 나와야 인식
- * 상대적으로 ‘원인사고’가 조기에 비용인식함

- 다만, 보험상품(계약) 중 ‘원인사고발생’이 아닌 ‘지급조건의 완성’에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장대상 위험을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아니라 다른 요소(청구여부, 금액규모 및 지급 등)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것에 기인함
 - * 예시1) 임원배상책임보험상 임원의 행위시점이 아닌 배상청구자의 소송제기가 보험기간 중에 이뤄져야 함. 이런 보장속성을 Claim-Made Basis라고 함
 - * 예시2) 기왕증 보장 조건부 생명보험계약 및 건강보험계약

- ◆ 환급의무는 계약조건에 명확히 기술되고 전산시스템으로 상시관리 하므로 보험사가 지급 사유(보험료 환급/미납, 계약만기 등)를 발견하여 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환급의무가 계약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보험사가 알지 못하는 ‘IBNR효과(발생여부 및 금액의 불확실성)’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 환급의무의 발생시점

항 목	시간적 기준	설 명
(사고 시) 책임준비금	원인사고 발생시점	결산일 현재 사고발생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하여야 하면, 보험금과 함께 (적립된)책임준비금을 함께 지급 시 사고발생 당시 해당계약의 (순보식)책임준비금
실효비금	계약 실효일	· 해지환급금: 해당계약의 실효시점 해지환급금 · 계약자배당액: 해당계약이 유배당계약인 경우, 실효시점 현재 계약에 귀속된 배당액.
(미지급) 만기환급금	계약 만기일	결산일 현재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못해 지급/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금액
미환급 보험료	미환급보험료 발생일 (예시:배서기준일과 배서신청일 중 늦은 날)	기납입한 보험료 중 향후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다(초과)/중복로 인하여 계약자에 환급하여야 보험료 중 미환급액

- 계약조건에 따르면, 계약이 유지되어 계약 목적으로서 ‘효력(보장, 계약유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키는 조건의 성립시점’ 또는 ‘계약상 필요하지 않아 반환되어야 할 상황이 인지된 시점’

- 환급의무가 발생한 사유는 계약관리를 통하여 보험사가 인지하여 계약자에 통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뒤늦게 인지하는 IBNR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결산일 현재, 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 손실보전준비금)은 배당업무상 보험법규에 따른 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 결과일 뿐임. 보험법규상 배당업무상 처분은 모두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Incurred) 배당부계약 이익에서 시작하므로, 배당부 이익의 발생시점이 지급사유 발생시점임. 다만, 손실발생 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발생사고부채의 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적립된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입할 수 있는 사유(손실보전)의 존재를 이유로, 잔여보장부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나 그 처리방식 및 경제적 효과는 발생사고부채와 동일함

Q 5.3

지급의무의 해소사유 및 해소시점은 무엇인가?

- ◆ 발생사고부채의 지급의무 해소사유는 원칙적으로 지급임. 단, 실효비금에선 계약자가 부활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될 수도 있으며,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은 계약자 배당부 계약에서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앞에서 말한 배당준비금을 환입하여 그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차감/소멸될 수 있음
- ◆ 지급의무의 해소사유와 해소시점을 분석하는 것은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서 지급의무 대상계약건의 3요소(발생시점, 소멸시점, 금액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
- ◆ 원칙적으로 지급의무의 해소사유 및 해소시점은 지급이며, 지급시점임. 다만, 새로운 보험 상품 보험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등의 변화로 새로운 해소사유 및 해소시점의 변화(업무프로세스 변화는 기존 경험통계와 다른 해소시점을 나타낼 수 있음)가 나타날 수 있음
- ◆ 발생사고부채 중 실효비금은 대부분 지급됨으로써 지급의무가 해소되지만, 계약자의 부활 옵션 행사에 의해서도 실효비금에 관한 지급의무는 해소(잔여보장부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청구권 소멸시효 시에도 “관련 사회복지재단 등”에 실효비금을 이전함으로써 해소(소멸시효 이후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해소시점은 소멸시효시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재단에서 환입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통계분석시 소멸시효 이후 실제로 지급했던 건은 소멸시효까지로 반영해야 할 사항)시킬 수 있음
- ◆ 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손실보전준비금)중에서 손실발생 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발생사고부채의 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환입도 지급의무 해소사유에 해당함

Q 5.4

발생사고부채의 종류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방법은 무엇인가?

- ◆ (보험사고에 대한)보장의무는 총량추산(Bulk Reserving, Stochastic Reserving, CLM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림)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기법(Mack방식, SCLM방식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도 함께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현행 업무요건과 달라진 점임. 환급의무는 지급의무의 발생대상, 발생시점, 해소시점 등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추정모델 (일종의 계리모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임. 배당의무는 환급의무와 비슷한데, 다만 배당의무에 대해선 약정이율 (최저보증이율 적용 포함)로 이자부리하는 등 계약조건상 부담이 없음. 즉, 배당부계약에선 이미 적립된 배당준비금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배당준비금을 재원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이익을 내야 한다든지 하는 계약조건상의 부담은 존재하지 않음(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발생 시 상계하는 것은 발생사고부채의 환입으로 처리함)
- ◆ 보장의무에 관한 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기존 총량추산(Bulk Reserving)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라 실무적으로 낯선 방법은 아님. 다만, 개별추산(Case Reserving, 손해사정사가 개별사고에 대해 적절한 추산보험금)중심으로 충분성 검증(Adequacy Test)를 하거나 IBNR 적립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IBNR = 총량추산방식 산출액 - OS)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음
- ◆ 검증수단이 아니라 최선추정(BEL)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현금흐름 산출에서 Data 분석을 통한 총량추산기법의 선택, 통계기간/ 진전기간의 결정, 그 외 총량추산 시 고려하거나 판단해야 할 사항(추세의 존재여부, 언더라이팅 효과의 존재여부, 거대사고 및 대재해 등 통계적 이상치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

- 통계분석을 통하여, 회사 경험통계와 부합하는 총량추산 방법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방법론을 결정해야 함(대개 사후검증을 통하여 추정오차가 작은 방법을 선택)
- 거대사고 및 대재해 등 통계적 이상치가 있으면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보정을 적용할 수 있음(사례: 과거 보험금 통계에서 총량추산의 현금흐름 산출시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있는 경우, 과거 가입금액 10억 가능했으나 현재 미지급인 사고에선 3억까지만 발생가능하면 10억은 3억으로 줄여서 반영)
- ◆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Stochastic 한 총량추산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ck방법임. 다만, 불확실성(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산출하기 위한 총량추산 방법에는 그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I.I.D.(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가 정과 같은 전제가 있는데, 이것과 상충하는 경험통계상 속성(추세의 존재, 대재해, 언더라이팅 효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만약 존재하면 이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보정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위험조정 산출방안 마련”2015년12월 참조)
- 보장의무에 관한 총량추산 방법 사례(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참고〉 총량추산 방법에 관한 적용안 사례

- ① BEL : 직전 5년 간 보험 지급금 통계를 활용하여 진전계수 산출하고 향후 5년간 지급금 현금흐름 추정
 - ② RA : Mack 모형* 활용하여 산출
- * Mack 모형: 과거 지급보험금 data에 대한 분포 가정 없이 평균과 분산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Normal과 Log-normal(신뢰구간 90%) 분포에 적용

- ◆ 발생사고부채 중 환급의무는 IBNR효과가 없으므로 현금흐름 추정에 있어서 불확실성(변동성, RA)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음. 최선추정부채(BEL)은 현금흐름에 관한 경험통계 분석(지급의무 발생부터 해소까지 경과기간별 현금흐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현금흐름 추정모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음
 - 환급의무에 관한 현금흐름 추정 사례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참고〉 환급의무 BEL 추정에 관한 적용안 사례

- ① 지급율: $\text{경과기간별 지급금}(t) \div (\text{미지급금}(t) + \text{지급금}(t))$
*대상통계기간의 설정은 현재와 유사한 속성을 보일 기간으로 정함
- ② 할인율: GoC의 잔여 보장부채에 적용된 할인율

Q 5.5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 및 이상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먼저, 발생사고부채 중에서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로 판단함. 환급의무는 지급의무의 발생여부와 발생금액에 대한 IBNR효과가 없고 지급시점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순이자효과에 불과하여 크지 않음. 배당의무는 이미 발생한 배당부계약의 이익을 처분하여 그의 미지급의무를 갖는 것이며 이미 배당된 지급의무에서 발생하는 의무(발생사고부채로 적립된 금액에서 파생되는 지급의무)는 없는 편임
- ◆ 보장의무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비금융위험에 위험조정(RA)로 처리하는데, Mack방식 등 총량추산기법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경험통계(주로Triangle)에서 통계적 이상치(Outlier)를 발견하게 됨. 이때, 결산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보장의무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거, 보정 등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 ◆ Mack 방식 등 Stochastic Model(확률론적 총량추산방식)을 적용한 Run-off Triangle에선 확률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하므로 적절한 수준(예시: 75percentile 등)을 정하여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음(예시: 99.5Percentile로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도 있고, 75Percentile로 RA를 측정할 수도 있음). 다만, 예를 들어 Mack방식을 가정하여, 이런 변동성을 평가한다면 Run-off Triangle에 투입된 Input Data가 어떠한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Input Data에 왜곡을 초래하는 이상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보정 등 대응조치를 함

- ◆ 이상치(Outlier)는 업무관행으로 제거 혹은 보정하는데, 낮은 확률로라도 재현가능성(실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확률만큼 반영해야 하며 확률이 낮다고 무시/제외해선 안 됨. 반대로, 재현가능성이 없다면 제거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보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 및 절차를 정한 보험사의 내규가 있다면, 일관성 등 업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 유의할 점은 이상치가 대형사고와 대재해로만 존재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Mack방식 등 Stochastic Model은 I.I.D.(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변동성을 만들어 낸다는 점임. 그러므로 (대형사고 및 대재해를 포함하여)LDF에서 추세의 존재, 언더라이팅 효과 등 I.I.D.가정과 상충하는 요소도 이상치에 해당함

Q 5.6

발생사고부채에 있어서 재보험(출재) 효과 추정은 어떻게 하는가?

- ◆ 재보험(출재)효과는 원수계약의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게 적용하여 재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 효과를 추정. 대체로 실무적으로는 출재율, XoL의 Excess Point 등 출재조건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한 계리적 모형 혹은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할 방안도 필요함. 다만, 보험위험만을 출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선 비보험위험의 출재는 다루지 않음
- ◆ 잔여보장부채와 마찬가지로, 발생사고부채도 원수계약의 현금흐름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게 적용하여(기준서 문단63) 재보험계약의 조건(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을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함. 비례재보험은 원수계약의 현금흐름에 UY(GoC)별 출재율(대개 GoC단위 내에 속해 있는 Treaty, Facultative Q/S, Surplus 모두 포괄/합산)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비비례 재보험은 대재해 혹은 대형사고로 인한 원수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서 과도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비비례재보험을 적용했을 때 그 영향을 제한/축소하는 방식임
- ◆ 실무적으로(마감, 결산) 개별추산액(OS)는 재보험조건이 적용된 출재OS가 산출되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IBNR은 경과보험료 및 경과위험보험료(대개 직전 1년)에 IBNR율을 적용하는 출재IBNR을 추정함.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고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총량추산 Run-off Triangle(여기서 LDF 등을 반영하여 BEL과 RA를 산출)에서도 Input Data에 출재효과(출재계수를 차감한 보유기준으로 Run-off Triangle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출재 Run-off Triangle도 사용됨)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기도 함

방안 1

- ◆ 재보험효과를 산출함에 있어서 원수에서 산출된 원수 IBNR율을 재보험에서도 그대로 사용함 (개별추산은 출재OS를 사용). UY(GoC) 내에서 출재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예를 들어 소수의 비례 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됨

방안 2

- ◆ 재보험구조가 복잡한 경우(예시: 손보의 일반보험 중 재물성보험), 보유기준(원수-출재)으로 Run-off Triangle을 만들어 보유기준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원수기준 Run-off Triangle에서 산출된 현금흐름에 차감하여 출재효과를 측정함. 현금흐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산출된 IBNR 금액으로 그 효과를 반영하기도 함. 방안2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 사고연도에 대형사고와 대재해 등으로 비비례재보험 등 복잡한 재보험계약이 현금흐름에 크게 효과(영향)를 주는 것에 비하여 (방안1)에서 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임

방안 3

- ◆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방안은 매년 재보험계약구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음을 전제(방안2)는 대형사고 및 대재해의 발생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 및 대재해로 인한 재보험계약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재보험구조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님)로 한 것임. 그러나, 보험사의 재보험구조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예시: 비례출재가 UY별로 크게 변동시)에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예시: (방안2)를 반영하면 Run-off Triangle의 LDF는 출재율 변동효과를 반영하는)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Run-off Triangle의 과거 출재데이터를 'LDF(진전계수)를 적용하여 진전시키는 대상 사고연도'의 재보험구조에 맞춰 보정하는 방안이 있음
- ◆ 재보험계약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위의 세 가지 방안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리적 분석과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법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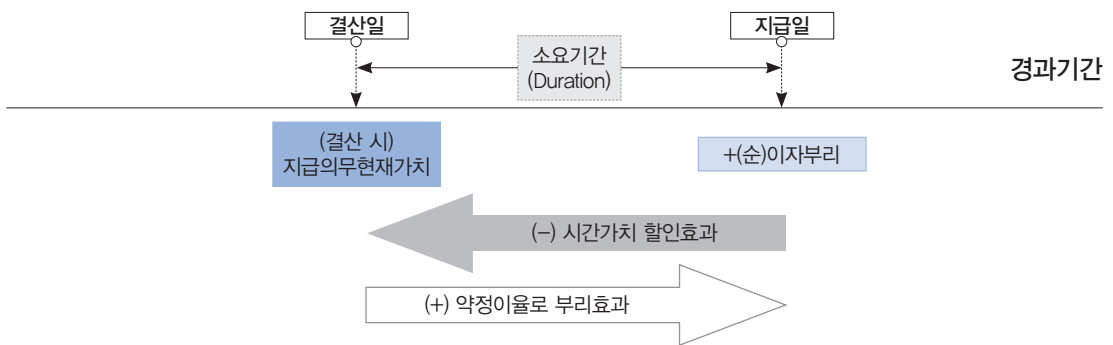
Q 5.7

현금흐름 추정에 있어서 실무적 부담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IFRS 17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예외적 방법은 무엇인가?

- ◆ 시가평가의 원칙론적인 방법은 실무적으로 재무적 영향에 비하여 ‘과도한 노력과 불합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시가평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발생사고부채 평가에 현재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법을 고려할 수 있음
- ◆ 발생사고부채는 크게 보증의무, 환급의무, 배당의무로 나누지만, Q4.4~4.6에서 제시되는 세부항목(환급의무 예시: 미지급만기환급금, 실효비금, 미환급보험료 등)으로 보면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제시된 세부항목별로 지급의무의 발생사유(중요한 사건), 대상계약의 식별,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과 추정 및 할인/이자부리(환급의무는 계약조건상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부리도 포함) 등을 수행한다면 그 업무량은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음. 그에 비하여, 세부항목별 금액규모를 보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세부항목 중에는 현행 보험부채의 영역으로 보지 않거나(구상채권), 다른 세부항목과 연계되어 처리되는 것(실효비금 내 배당부계약의 계약자배당)도 현금흐름 추정시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임
- ◆ 발생사고부채의 세부항목들은 원칙론적인 시가평가를 적용할 하면, 그 세부항목들의 재무적 중요성에 비하여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시가평가의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과도한 노력 및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은 예외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예외적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행 원가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현행 원가법’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시가평가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함. 그리고, ‘현행 원가법’와 시가평가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발생사고부채 시가평가의 영향요인이 다음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

- 발생사고부채 시가평가의 영향요인



〈참고〉 시가평가의 영향요인과 ‘원가법에 부합하는 상황’

- ① 대상금액: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금액 (예시: 결산일 현재, 실효비금)
→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금액이 중요성 관점에서 크지 않음
- ② 소요기간: 결산일에서 지급일까지 소요기간, 부리와 할인의 대상기간
→ 소요기간이 짧아 부리와 할인의 영향이 중요성 관점에서 크지 않음
- ③ 약정이율과 할인율의 차이: 계약조건상 부리이율과 할인율의 차이
→ 부리이율과 할인율의 차이가 작아 중요성 관점에서 영향 크지 않음

Q 5.8

IFRS 17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그 예외적 방법에 대하여 적용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 예외적 방법(현행 원가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원칙론적인 시가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수준인지 여부에 관한 것. 다음, 중요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예외적 방법과 원칙론적 시가평가의 차이가 회사의 재무상태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 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감사인과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해질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규모 및 판매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 예외적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론적 시가평가의 어려움(불합리, 비효율성)과 대안으로 적용하려는 예외적 방법이 산출결과가 중요하게 다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임
- ◆ 그러한 판단은 감사인과 논의를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그 논의과정 중 회사는 감사인에게 논리적 타당성, 통계분석, 관련 비용 등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들을 논의·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맞는 중요성 기준(절대적인 금액규모, 평가대상 대비 비율, 준수해야 할 절차/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회사의 규모나 판매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Q 5.9

IFRS 17에서 예외적 방법에 대하여 적용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중요성 관점에서 시가평가와 차이가 크지 않다)을 사용한 예시를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이해 목적의 사례로 효율성을 감안한 약식 시가평가 등을 제시

방안 1

- ◆ 중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함은 시가평가와 현행원가법을 두 가지를 모두 산출함을 전제로 함. 현행원가법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지만, 시가평가에는 ‘효율성이 반영된 약식 평가기법’이 필요

([2019 IFRS 17 실무 적용사례]에선 이해 목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실효비금

원가법	대상 금액규모	소요기간 (Duration)	시가평가				산출결과	중요성 기준
			부리이율	할인율 (EIR)	조정항목			
A	B	C	D	E	F	$G = \{B \times C \times [(1+D) \div (1+E) - 1] + F\} + B$	H = A - G 및 (A - G) / G	
10,000	10,000	0.250	3.50%	3.00%	-14	9.998	2 0.02%	

- *A: 원가법으로 산출된 실효비금(원금 + 실효이자)
- *B: 결산일 현재 적립된 지급의무금액
- *C: 소요기간, 과거 통계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중 평균된 지급소요기간(연단위)’
- *D: 부리이율, 결산일 현재 적립된 건의 ‘금액 가중 평균된 부리이율’
- *E: 할인율, 적립된 건의 ‘금액 가중 평균된 할인율(GoC별 EIR 적용)’
- *F: 결산일 현재 적립된 건에서 부활로 취소된 실효이자(다른 항목도 존재가능)부활률은 10%, 실효이자의 평균 부리기간은 0.4년(금액가중평균)

-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부리이율과 할인율은 해당 계약(GoC)를 금액가중평균으로 적용
- 소요기간, 부활률 등은 통계분석에 기초하여 정하되, 제도개선 등으로 데이터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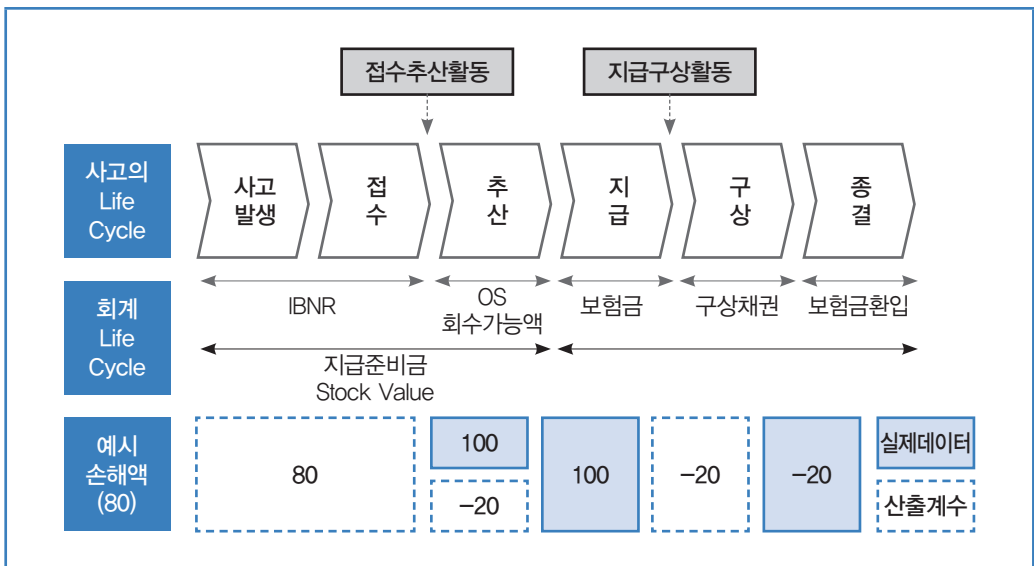
방안 2

- ◆ (방안1)에서 제시한 시가평가를 현금흐름 추정과 관련된 부활률, 소요기간 등 통계모수를 산출하여 약식으로 적용한 것에 비하여, 정례적(연 1회 등)으로 건별 데이터에 현금흐름 추정에 필요한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가정(부활률, 이자율의 변동 등까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음

Q 5.10

IFRS 17에 있어서 손해조사비의 추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 IFRS 17이 도입되면 현금흐름에 기초한 준비금이 적립되므로 보험금에 관한 현금흐름에 연계하여 추정됨
- ◆ IFRS 17이 도입되면 현금흐름에 기초한 부채가 적립되며, 현행과 달리 보장의무에 관한 부채가 최선추정부채(BEL)와 위험조정(RA)로 단순화되므로 현행 방식(OS와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적용을 정한 IBNR에 손해조사비율을 적용)으로 산출하기에는 시스템상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현행 방식이 해외사례(OS와 IBNR로 구분, 시행세칙 IBNR과 추가적립 IBNR의 구분이 없음)와는 차이도 있음
- ◆ 손해조사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필요한 업무처리비로서 보험금 지급 등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임. 그에 따라 '보험금 대비 비용(손해조사비)의 비율'로서 추정함. 그리고, 손해조사에 관한 활동이 주로 '접수/추산'과 '보험금지급/구상'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조사비가 두 시점으로 균등하게 나뉘져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함
 - 보험사고의 처리 흐름 중 손해조사비 발생시점 : 활동기준



- 경험통계분석 결과, 보험금 100억에 손해조사비가 4억 발생하면, 손해조사비가 보험금의 4%가 발생한다는 의미임
 - 그리고, 그 4%가 접수추산활동과 지급구상활동에 각각 50%(각 활동에 2%씩)씩 발생하므로, 보장의무로 적립된 부채를 보험사고 처리흐름에 따라 나누어 접수이전 IBNR건에 대해선 해당 사고건이 접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적립되고 이미 추산이 된 건은 지급구상활동에 쓰일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채로 적립됨
- ◆ **(구분요소 1)** 회사마다 손해사정조직을 운영하는 형태가 다른데, ‘직접 고용한 직원’과 ‘외주용역’으로 나눠 볼 수 있음. 손해조사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외주용역은 건별로 지급한 손해조사비가 해당 사고건에 귀속이 가능하므로(이런 속성을 가진 손해조사비를 ALAE라 함. ALAE :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총량추산 시 손해조사비를 보험금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에 비하여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사고 건별 귀속은 불가능하고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50 To 50 방식’(= $OS \times 0.5 \times \text{손해조사비율} + IBNR \times 1.0 \times \text{손해조사비율}$)을 사용하여 보험사고 처리 흐름에 맞춘 Factor (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진행상태에 따라 조정율/비용지급율)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 **(구분요소 2)** 손해조사에 관한 활동에는 구상활동이 있는데, ‘50 To 50’방식의 Factor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에선 구상/환입은 현금유출이 아니라 현금유입이라 Factor계수가 반대 부호를 가져야 하는 약점이 있으며, 향후 최선추정치(BEL)에 OS를 차감해 IBNR을 결정하면 (-)IBNR도 발생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보정된 손해조사비비율 산출식(= $\text{손해조사비} \div [\text{보험금} - \text{보험금환입}]$)이 필요함

- ◆ (손해조사비 추정방식) 앞에서 설명된 두요소를 적용하면, 총 네가지의 적용안(4 = 2 × 2 회)으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리고, 동일회사도 상품 및 손해사정조직 운영 등에 따라 나눠서 적용할 수도 있음

- 손해조사비 추정방식의 종류

구분		구분요소1 : ALAE 총량추산	
		ALAE 미반영	ALAE 반영
구분요소2 : 손해조사비율	구상/환입효과 미반영	(방안1) 현행	(방안2) 직접손해조사비 반영 추가
	구상/환입효과 반영	(방안3) 손해조사비비율 산출식 수정	(방안4) (방안2)와 (방안3)을 병행

6. 현재가치평가 할인율

Q 6.1

IFRS 17에서 발생사고부채 평가에 있어서 할인율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며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가?

- ◆ 발생사고부채에선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GoC별 EIR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 평가 시 적용되던 할인율이 (할인율 EIR의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을 가짐. 보증의무는 총량추산 시 시간가치 반영이 없이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 17의 도입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게 되었고, 환급의무 등은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었음
- ◆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시간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발생사고부채는 잔여보장부채와 다른 점이 없음. 다만, 발생사고부채는 발생사고 부채의 인식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를 기간을 대상으로 함

〈참고〉 IFRS 17 기준서 이행현금흐름 구성요소의 수식화

$$BEL_0 = E\left[\sum_{t=1}^N \frac{(CF_t^{Out} - CF_t^{In})}{(1+r(t))^t}\right], RA = U(\overline{BEL}) - U(BEL)$$

▣ 수식기호의 설명

- ① CF_t^{Out} : t시점 유출현금흐름
- ② CF_t^{In} : t시점 유입현금흐름
- ③ $r(t)$: EIR로 표시된 t시점의 할인율
- ④ \overline{BEL} : 확률변수인 BEL(최선추정치)에 해당하는 확정치
- ⑤ $U()$: 효용함수

- 잔여보장부채는 발생사고부채의 인식시점이 아니라 유출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며,
 - (잔여보장) 결산일 이후 발생할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의무 해당액과 그 지급시점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립액을 산출함
 - (할인율 등 변동효과가 없다면) 지급 시까지 할인율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장의무는 해소됨
 - 발생사고부채는 발생사고부채의 인식시점부터 유출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함
 - (발생사고부채) 결산일 현재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의무 해당액과 그 지급시점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립액을 산출함
 - (할인율 등 변동효과가 없다면) 지급 시까지 할인율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의무는 해소됨
- ◆ 결론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인식하는 시점부터 잔여보장부채 상 **보장의무**는 발생사고부채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할인율 등 변동효과가 없다면)보험금 지급시점까지 남아있는 시간 가치를 발생사고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그러므로, 잔여보장부채에서 할인율의 적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했던 모든 정보(UY/GoC, GoC 별 할인율, 전환시 전환기준 할인율 등)가 그대로 적용됨. 특히,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잔여보장부채와 동일해야 함
- ◆ 그리고,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고연도(AI)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Q 6.2

발생사고부채 평가 시 현금흐름상 적용된 가정은 무엇인가?

- ◆ 발생사고부채 중 보장의무는 IBNR효과가 존재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개별건을 알 수 없음. 그런 이유로, 현금흐름에 관한 일정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총량추산 시 각 진전기간 별 지급보험금의 해당 진전기간의 중앙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가정(UDD가정, 전 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는 가정임)과 산출된 IBNR을 UY(GoC)별로 할당하기 위하여 가정(IBNR은 통상 수익·비용 대응을 고려하여 수익(경과보험료, 경과위험보험료)에 배분하는데, 배분 대상기간(예시: 직전 1년 등)과 UY[GoC]별 분포(예시: 균등가정)가 있음)이 대표적임. 이러한 가정이 할인율과 관련된 이유는 할인기간(부리기간)과 관련되고 UY(GoC)별로 적용해야 할 할인율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임
- ◆ Run-off Triangle에서 진전기간별 보험금이 균등분포를 가정하는 것(UDD)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경험통계분석을 통하여 부합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언더라이팅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손해액에 대한 보상기준의 차이(예시: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자기부담금 규제) 등에 균등분포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평가 시에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 ◆ 업무관행으로 직전 1년 경과보험료 및 경과위험보험료에 IBNR 산출액을 배분하는데, 이견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IBNR효과(지급 의무의 발생을 뒤늦게 인지)가 직전 1년 동안 균등하다는 것은 합리성이 낮으며 경험통계 분석결과를 과거 기간에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배분함을 보여 왔음. IBNR 건의 Reporting Pattern(Time Lag에 대한)에 맞춰 배분 기간을 조정하는 게 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 ◆ 배분기간이 정해진 이후, UY(GoC)별 배분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UDD 가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앞에서 말한 바와 유사하게 균등분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통계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Q 6.3

IFRS 17에서 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기간별 이자부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 UY(GoC)별로 EIR을 산출하여 기간별 이자부리를 하며 이를 기초로 이자비용을 산출함. 다만,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 전기말 BEL(시가 BEL)에 EIR을 적용하여 방안과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전기말 BEL(원가 BEL)에 EIR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발생사고부채의 전기말 혹은 당기 말의 시가 BEL과 원가 BEL의 차이를 누적기타포괄손익(AOCI)으로 하여 변동요인분석 등에 사용함
- ◆ GoC별 EIR 산출 등은 잔여보장부채와 동일함

방안 1

- ◆ (분기)이자비용 = 전기말 시가 BEL × [(1+EIR)^{0.25} - 1]
- 할인된 분기 예상보험금 × [(1+EIR)^{0.125}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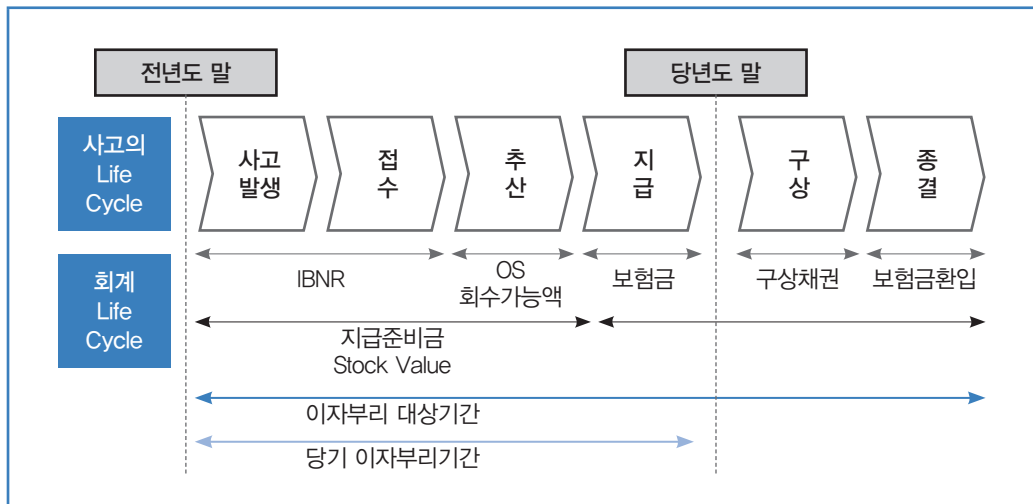
방안 2

- ◆ (분기)이자비용 = 전기말 원가 BEL × [(1+EIR)^{0.25} - 1]
- 분기 예상보험금 × [(1+EIR)^{0.125} - 1]
- ◆ 원가 BEL은 할인 없이 명목금액으로 산출된 BEL이며, 시가 BEL에 누적기타포괄손익(AOCI)를 더해 줌으로써 산출됨
- ◆ 당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이자비용을 발생하여 위의 안에 더해 줄 수도 있음
- ◆ 앞의 안은 예상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예상하지 못한 현금흐름(실제-예상)에 이자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예상하지 못한 현금흐름은 그 전체를 추정오차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존재함
- ◆ 위험조정에 대한 할인 및 이자부리는 잔여보장부채의 처리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음

Q 6.4

IFRS 17에서 보장의무에서 개별 건에 대한 이자비용 할당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 보험금유비용 측정 관점에서 '예상이자'와 '실제이자'를 비교하려할 때, 개별건에 기간별 정확한 할인액과 이자할당이 필요함. 이러한 목적에서 Q6.3에서 논의한 이자비용을 개별건에 할당할 수 있음
- ◆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추산 이후에는 부리기간, 개별건의 금액, 해당 GoC(할인율, 부리이자율의 결정단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개별건에 그 이자를 할당하고 나머지를 IBNR 해당이자로 처리할 수 있음
 - 개별건의 이자부리 대상기간과 당기 이자부리기간



7. 발생사고부채 변동요인분석

Q 7.1

IFRS 17에서 발생사고부채의 변동요인분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 공시의무 또는 재무상 분석을 목적으로 현행보험서비스와 과거보험서비스의 영향을 식별함으로써 회사의 손익, 회사의 추정에 내재된 변동성을 분석·전망할 수 있게 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보험금융비용(손익), OCI인식금융비용(자본)으로 나눠 파악할 수 있음. 또한 현금흐름과 투자요소로 구분하여 파악함
- ◆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를 다루는데, 변동요인분석상 과거보험서비스로 인한 손익악화(개선)인지 현행보험서비스로 인한 것인지를 식별함은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음. 특히, 과거보험서비스로 인한 손익악화가 있다면, 현금흐름 추정을 기초로 예측된 평가에 내재된 불확실성(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음
- ◆ 변동요인분석에 있어서 보험요소와 투자요소에 구분함

Q 7.2

발생사고부채에 있어서 추정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변동요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 추정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기 예상-실제 차이와 추정의 변경이 있음. 다만, 회사는 업무 목적에 따라 변동요인을 세분화하는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

방안 1 보장의무의 BEL 변동분석 (IBNR 중심)

변동분석항목	설명	산출방법
기시 시가BEL	전기 말BEL	전기 말 예상현금흐름 & 전기 말 시가 EIR 적용
기시 AOCI 환원	누적OCI 환원	전기 말 원가 BEL - 전기 말 시가 BEL
기시 원가차액	누적원가와 재산출 간의 차액	전기 말 재 산출 BEL - 전기 말 원가 BEL
당기 예상 CF Release	전기 예상한 당기 예상지급 보험금Release	전기 말에 예상한 당기 예상지급보험금 해당액
이자비용	이자비용 인식	잔여보장부채 방식과 동일하게 Plug-in 방식으로 산출
EIR 변경 효과	가중평균 EIR 변경 효과 산출	기말 가중평균 EIR 적용 BEL - 기시 가중평균 EIR 적용 BEL
추정의 변동 (가정변경)	전기 말과 당기 말의 중복 진전기간 추정액의 변동분	중복 진전기간별 (당기 말 추정 원가 BEL - 전기 말 추정 원가 BEL)
당기 사고발생분	당기 신규 청구발생분에 대한 IBNR 추정액	당기사고 발생분의 진전기간별 예상지급보험금의 현가
AOCI 인식	당기 누적OCI 인식	당기 말 시가 BEL - 당기 말 원가 BEL ※ 당기 말 원가 BEL 산출은 잔여보장부채와 동일하게 Top쌓기 방식 적용
기말 시가BEL	당기 말 IBNR BEL	당기 말 현금흐름 & 당기 말 시가 EIR 적용

방안 2 보장의무의 BEL 변동분석

◆ BEL 무브먼트(직접손해비 포함)

산출단계	설명	회계반영
전기 말 시가BEL		
전기 말 원가BEL	AOCI 환입	-OCI
이자비용	(전분기 말 BEL + 1분기 예상지급금)에 EIR 반영하여 산출	PL : 보험금융비용
실제현금흐름	보험금 - 보험금환입 + 직접손해조사비	BS
당기 사고 발생손해액	당년도AY 기준 (현금흐름 + O/S증분 + IBNR증분) *발생손해액에서 투자요소는 차감	PL : 보험손익
추정의 변경	전기 추정치의 예실차 반영(예실차 및 추정변경)	PL : 보험손익
당기 말 원가BEL	당기 총량추산 평가액	
당기 말 시가BEL	AOCI 전입	OCI

◆ 장래 간접손해조사비 무브먼트

산출단계	회계반영
전기 말 장래손해조사비	
실제현금흐름	BS
당기 사고 발생분	PL: 보험손익
당기 말 장래손해조사비	

◆ RA 무브먼트

산출단계	회계반영
전기 말 RA	
당기 사고 RA	PL: 보험손익
추정의 변경	PL: 보험손익
당기 말 RA	

방안 3 보장의무의 BEL 변동분석 (IBNR뿐만 아니라 개별추산도 포함)

변동분석항목		과거 서비스분	현행 서비스분	산출방법
전기말 시가 BEL	A		N/A	전기 말 예상현금흐름 & 전기 말 시가 EIR 적용
전기말 AOCI	B		N/A	전기 말 원가 BEL - 전기말 시가 BEL
전기말 원가 BEL	C=A+B		N/A	전기말 예상현금흐름의 합계액
당기 신규발생액	D	N/A		당기말 현행서비스의 예상현금흐름+ 당기 지급액
당기 예상보험금	E			당기 예상현금흐름, 단 현행서비스는 당기 지급액
당기 실제보험금	F			당기 실제 현금흐름
예실차 보험금	G=F-E			
당기RA상각액	H		N/A	전기말 RA × 당기 예상보험금 ÷ 전기말 원가 BEL
향후 추정보험금의 변경	I			중복진전기간별 (당기말추정원가BEL - 전기말추정원가BEL)
당기 예상이자비용	J			(전기말 시가 BEL + 당기 예상보험금)에 EIR 반영
당기 실제이자비용	K			당기 개별건의 발생이자.향후분은 현금흐름반영
예실차 이자비용	L=J-K			
전기말 예상 대비 보험금 변동	M=G-H+I			
당기말 원가 BEL	N			당기 말 예상현금흐름(의 합계액)
당기말 AOCI	O			당기 말 예상현금흐름 & 당기말 시가 EIR 적용
당기말 시가 BEL	P=N-O			

- 주) 1. 향후 추정보험금의 변경은 가정변경에 해당함.
 2. 향후 추정보험금의 변경을 포함하여 당기 말 EIR변경효과를 추가할 수 있음
 3. 손해조사비를 추가할 수 있음.
 4. 예상이자비용 계산 시 진전기간의 연 중앙에 일시지급된 것으로 가정함.
 5. 실제이자비용 계산 시 개별건(보험금, OS)의 발생이자는 개별계산하고 향후분은 현금흐름을 반영함.

◆ BEL 무브먼트(직접손해비 포함)

변동분석 항목	설명	산출방법
기시 시가 BEL	전기 말BEL	전기 말 예상현금흐름 & 전기 말 시가EIR 적용
기시 AOCI 환원	누적OCI 환원	전기 말 원가BEL - 전기 말 시가BEL
기시 원가차액	누적원가와 재산출 간의 차액	전기 말 재 산출BEL - 전기 말 원가BEL
당기 예상 CF Release	전기 예상한 당기 예상 지급금Release	전기 말에 예상한 당기 예상지급금 해당액
이자비용	이자비용 인식	잔여보장부채 방식과 동일하게Plug-in 방식으로 산출
공시이율 예실차	당기 예상BEL의 공시 이율 예실차	전기말 실제 공시이율 적용한 상BEL과 당기 말 실제 공시이율 적용한 예상BEL의 차액
EIR 변경 효과	가중평균EIR 변경 효과 산출	기말 가중평균EIR 적용BEL - 기시 가중평균EIR 적용BEL
속성변경 효과	기시 대상계약의 속성 변경	전기 말에 예상한 당기BEL과 당기 실제BEL 간의 차액(단, 전기 말 대상계약에 한함)
당기발생분		당기에 발생한 보험금 중 당기지급분을 제외한 원금
계리가정 변경 효과	지급패턴 가정 변경 효과 산출	당기 말 지급가정 변경 후 원가BEL - 당기 말 지급가정 변경 전 원가BEL
재량가정 변경 효과	재량 가정 변경 효과 산출	당기 말 재량가정 변경 후 원가BEL - 당기 말 재량가정 변경 전 원가BEL
AOCI 인식	당기 누적OCI 인식	당기말 시가BEL - 당기말 원가BEL ※ 당기 말 원가BEL 산출은 잔여보장부채와 동일하 게 탑쌓기 방식 적용
당기 말 시가BEL	당기 말 IBNR BEL	당기 말 현금흐름 & 당기 말 시가EIR 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

III

보험료배분접근법

8. 유사성 Test 및 손실부담계약

Q 8.1

유사성 Test 대상 및 방법론은 어떻게 되는가?

◆ 유사성 Test 대상

방안 1

모든 계약집합에 대해 유사성 Test를 수행하거나, 계약집합을 보험기간 1년 이하/1년 초과 계약으로 구분한 후, 1년 초과 계약집합에 대해 유사성 Test를 수행할 수도 있음

방안 2

계약집합내 보험기간 1년 초과계약의 비중을 측정하여, 일정 수준(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집합에 한해 유사성 Test*하며, 유사성 Test의 대상은 잔여 보장부채 한도

* 예시: 집합 내 보험기간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이 00%를 초과하는 계약집합에 한해 유사성 Test

- 보험기간 1년 이하 계약은 PAA와 BBA가 합리적 근사치라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 수준은 10%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방안 3

계약집합 내 만기 1년 초과건이 1건이라도 존재하면 유사성 Test 수행

〈참고〉 2012년 2월 Staff Paper 3F

- ▣ 다음의 경우, PAA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
 - 계약기간 3년인 Contract Surety Bond(건설공사보험과 유사한 형태)
 - 보험기간 3년 이하
 - 포트폴리오 내에 듀레이션이 긴 계약과 짧은 계약이 섞여 있을 경우, 듀레이션이 긴 계약의 규모가 적을 경우, PAA 적용

- (근거) 유사성 Test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준서 53(b)를 충족해야 되나, 53(b)는 계약그룹 내 모든 계약의 만기가 1년 이하일 것으로 해석됨

〈참고〉 문단53(b)

- ▣ (b) the coverage period of each contract in the group(including coverage arising from all premiums within the contract boundary determined at that date applying paragraph 34) is one year or less.

◆ 유사성 Test 방법론

방안 1 기준서상 타당한 근사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BBA 모델로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필요하며, PAA로 측정한 결과와의 차이율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설정

* 예시: $|BBA - PAA| \div BBA \leq 00\%$ 인 경우, PAA 적용

- 이 때, PAA 적용 가능 기준(비율)*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함

* IFRS 17 시행을 대비한 보험감독회계 QIS에서는 10%

방안 2 BBA 유출패턴에 부합하도록 PAA 수익인식 기간별 배분 기준을 설정하면, BBA와 PAA는 유사하게 되는 바, 별도의 정량적 평가 기준은 불필요

〈참고〉 BBA와 PAA 보험부채 비교

▣ (가정)

- 보험기간 4년, 연도말 결산, 일시납보험료 10,000원
 - 화폐시간가치 및 위험조정 없음
 - 신계약비 일시납보험료의 10%, 손해조사비 6%
 - 예상Ultimate Loss는 보험료의 75%
- 유출패턴은 시간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 지급보험금 4년간 발생손해액 누계의 70% 지급 후 2년간 최종 정산

(단위 : 원)

구분/연도	1	2	3	4	5	6
유출패턴*	25%	25%	25%	25%		
발생손해액누계	1,875	3,750	5,625	7,500		
지급보험금누계	1,313	2,625	3,938	5,250	6,375	7,500

*총 예상손해액 대비 당기 예상손해액

(단위 : 원)

구분/연도		0	1	2	3	4	5	6
P A A	미경과보험료	9,000	6,750	4,500	2,250	0	0	0
	발생사고부채	0	563	1,125	1,688	2,250	1,125	0
	총부채	9,000	7,313	5,625	3,938	2,250	1,125	0
	보험수익		2,500	2,500	2,500	2,500	0	0
	보험서비스비용		2,275	2,275	2,275	2,275	0	0
	△ 발생사고부채		563	563	563	563	-1,125	-1,125
	당기지급보험금		1,313	1,313	1,313	1,313	1,125	1,125
	손해조사비		150	150	150	150		
	당기순이익		225	225	225	225	0	0
B B A	CSM	900	675	450	225	0	0	0
	BEL	8,100	6,075	4,050	2,025			
	(C/O)지급보험금	7,500	5,625	3,750	1,875			
	(C/O)손해조사비	600	450	300	150			
	잔여보장부채	9,000	6,750	4,500	2,250			
	발생사고부채	0	563	1,125	1,688	2,250	1,125	0
	총부채	9,000	7,313	5,625	3,938	2,250	1,125	0
	당기순이익		225	225	225	225	0	0

→ 유사성 Test는 정량적 평가기준(예. $|BBA-PAA| \div BBA \leq 00\%$ 이면 PAA)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 계약집합 내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을 기준으로 유사성 Test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 보완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 판단

Q 8.2

손실부담계약의 판단 및 산출은?

◆ “사실과 상황”에 대한 해석

방안 1 합산비율 100% 초과 등 이미 발생한 ‘사실’과 시나리오 테스트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예측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실가능성을 나타낸다면 손실 부담 여부 평가

- 이를 위해서 향후 예측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지표 필요

방안 2 사실과 상황을 정의(판단)하고, 이에 따라 잔여보장의 손실부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므로 매평가 시점(매월) 손실부담 여부 평가

◆ 손실부담부채 판단기준 적용 예시*

*주기적(매월) 손실부담 여부 평가

- 포트폴리오를 위험조정 신뢰수준*에 따라 손실계약, 이익계약, 손실가능계약으로 구분

* 신뢰수준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회사가 결정

- $BEL + RA(75\%) > PAA$ 부채장부금액 → 손실계약집합
- $BEL + RA(95\%) < PAA$ 부채장부금액 → 이익계약집합
- 그 외, 손실가능계약집합

◆ 손실부담부채 산출 절차

- 매년 손해율, 사업비율 등 계리적 가정 산출
 - 계리적 가정 산출단위는 포트폴리오 수준을 기본으로 필요시 세분화
 - 계리적 가정 산출시 경험통계기간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적용
- 매월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건별 현금흐름을 산출
 - PAA 부채 잔액과 비교하고 차액을 손실부담 부채로 적립

◆ 손실부담부채 추가적립 및 환입

방안 1 손실부담 Test로 인하여 추가적립된 금액의 상각은 손상평가 전 PAA를 적용하여 산출한 잔여보장부채의 상각패턴과 일관되게 적용

방안 2 전월 손상평가 추가적립액을 환입(비용 환입 처리)하고, 당월 손상평가 추가적립액을 적립(비용 처리)

☞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의 구분기준은 RA의 신뢰수준을 이용하는 등 내부기준을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

*손실부담계약집합, 이익계약집합, 손실가능계약집합

- '사실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손실부담평가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

- 추가적립액은 매월 평가한 기준으로 적립(전월 추가적립잔액 환입 후 당월 추가적립)

9.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Q 9.1

보험취득현금흐름 이연 및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 보험취득현금흐름 이연 여부

- 기준서상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 가능하나
 - 집합 내 보장기간 1년 이상 계약이 혼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계약비를 이연하는 것으로 채택할 수도 있음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반영 여부

- 기준서상 보장기간* 1년 이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고 간주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 불필요

*보장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

방안 1 보장기간 1년 초과 건은 시간가치 반영 필요

-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잔여보장부채 조정

방안 2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일괄 미반영

- 다만, 유의적 금융요소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예시: 이자비용 ÷ 보험수익 > 10%인 경우, 유의적 금융요소가 존재

방안 3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1년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요소 반영

☞ 보장기간 1년 초과 계약의 화폐 시간가치 등은 반영이 원칙

- 계약집합 내 1년 초과 계약이 혼재되어 있을 때, 회사가 정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 보완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 판단

10. BAA 잔여보장부채 측정 및 수익인식

Q 10.1

BBA 잔여보장부채 적립 및 측정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 BBA 잔여보장부채 적립여부

- 대부분의 보험사는 유사성 Test, 손실부담부채 평가 및 내부관리 등의 목적으로 BBA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예정
 - 실제 장부상에 적립하게 될 잔여보장부채는 PAA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가 다수

◆ 측정단위

- BBA 잔여보장부채 측정단위는 계약집합 기준으로 수행
 - 손실부담계약 Test는 산출된 가정을 계약별로 적용하여 계약단위의 현금흐름을 산출하되 측정은 계약집합 단위
- 손해를 가정 산출 단위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통합 혹은 세분*하여 설정
 - *예시: 가정 산출단위를 상품별로 세분

◆ 사고단위 분류 기준(Threshold)

- 고액사고(대손해) 기준을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 고액사고 통계량의 충분성 확보, 소액사고 손해율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적절한 기준을 찾을 필요
 - 소액사고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가 일정수준(예시: 10%) 이하가 되도록 결정하는 방법도 있음

Q 10.2

PAA 적용 보험계약의 수익인식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

◆ PAA 상각기준의 정의

- 기준서 B126 요구사항에 따라 시간의 경과 기준 또는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위험 해제 양상이 기대되는 경우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따라 상각

〈참고〉 B126

When an entity applies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in paragraphs 55–58, insurance revenue for the period is the amount of expected premium receipts (excluding any investment component and adjust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isk, if applicable, applying paragraph 56) allocated to the period. The entity shall allocate the expected premium receipts to each period of coverage:

- (a) on the basis of the passage of time; but
- (b) if the expected pattern of release of risk during the coverage period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passage of time, then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iming of incurred insurance service expenses.

◆ PAA 상각방법의 결정

-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상각
 - 보험기간동안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PAA의 수익을 균등하게 인식
 - *예시: 일할법, 월할법, 24분법 등
- 위험해제 패턴에 따른 상각
 - 보험기간에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따라 PAA의 수익 인식
 - *예시: 과거 손해액의 경험패턴, 미래 예상손해율 등
 - 과거 손해액의 경험패턴 외 일수합계법 등 간편법의 적용 가능

〈참고〉 간편법 적용의 장점

- 1) 수익 인식 패턴의 표준화 및 정형화
- 2) 일정한 수익인식 패턴으로 손익의 예측이 가능하며 효율적 관리 가능



재보험

IV

재보험

11. 포트폴리오 및 계약그룹

Q 11.1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계약그룹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 ◆ 재보험 포트폴리오와 계약그룹은 원수계약과 일관된 기준(유사한 위험 및 함께 관리)으로 구분하되, 재보험계약의 **집합성**(주로 Treaty), **Risk Transfer & Pooling**을 근거로 판단
- ◆ (유사한 위험) 각 재보험계약의 집합성과 원수에서는 다른 PF라도 그 위험을 Pooling하는 재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수PF가 통합·포괄되어 회사별 재보험계약(주로 Treaty)이 체결되는 등 재보험의 입장에서 위험의 유사성이 결정
 - 아래의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위험 결정
 - 예시1 : 재보험 협약서별 출재된 담보들의 대표위험을 기준으로 생보는 사망 또는 건강, 장기손보는 상해, 질병 또는 재물 포트폴리오로 구분
 - 예시2 : 재보험 위험은 “복합” 위험이라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구분. 단, 임의재보험은 원수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분류 (이에 따라, 손보의 경우 각 LOB별로 포트폴리오 결정하여 일반, 자동차, 장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 Summary of the TRG for IFRS 17 meeting held on 6 February 2018)

7. TRG members discussed the analysis in Agenda Paper 1 and observed that:
- (a) the lowest unit of account that is used in IFRS 17 is the contract that includes all insurance component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example in Appendix A to Agenda Paper 1:
 - (i) the contract is included in its entirety in a single portfolio and in a single group and is not split to reflect the ways its components would be allocated to portfolios and groups as if there were issued as separate contracts.

〈참고〉 재보험계약의 집합성

- ▣ (집합성) 가격, 거래단위, 거래주기 등 거래조건 및 손익정산 등에 있어서 출재대상인 보험 계약들(주로 원수계약)이 갖던 독립성이 상실되고 집합체인(주로 Treaty) 하나의 출재계약 Level에서 이뤄지므로, 출재대상 보험계약으로 손익 및 위험수준을 나눌 수 없음
 - 출재수수료 정산 시 최저·최고 한도가 존재하면, 개별 원수건의 출재손익 단순합계와 달라져 손익은 배분 필요

집합성의 사례: Q/S Treaty

(매출상황) Treaty에는 A상품(A PF)(원수보험료200억), B상품(B PF)(400억)
 (재보험 조건) 출재율50%, 출재수수료율 최저10% ~ 최고30%
 출재수수료(RIC) 산식: $95\% - \text{손해율}$, 단 $10\% \leq \text{RIC} \leq 30\%$
 (손해율 상황) A 상품75%, B 상품95%, 합산(A + B) : 88.3%

[결과 및 분석] 정산된 출재수수료30억(=출재보험료300의10%)

- 개별상품별
 - A: $20(=200 \times 0.5 \times [0.95 - 0.75])$
 - B: $0(=400 \times 0.5 \times [0.95 - 0.95])$
 - 개별 상품별 계산결과를 단순합산과 불일치
- 개별상품별 최대한도 적용
 - A: 위의 계산 준용
 - B: 20, 최저한도(= $400 \times 0.5 \times \text{Max}[0.95-0.95, 0.1]$)
 - $40(= 20 + 20)$ 개별 상품별 계산시 개별 최저한도를 적용한 결과와도 불일치
- 상품합산: $30(=[200 + 400] \times 0.5 \times \text{Max}[0.95-0.883, 0.1])$
 - 한도 때문에 상품 합산시 제3의 결과
 - ⇒ **개별상품(원수PF)으로 나눌 수 없음**
- Pooling효과(대수의 법칙 및 공분산효과 등)로 인하여 출재대상 보험계약의 (출재된)보험위험조정(RA)은 개별 계약/상품Level로 나눌 시 할당 필요

- ▣ (Risk Transfer & Pooling)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 리스크관리의 수단으로서, 보험사(주로 원수사)에선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위험을 이전시키는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여러 위험의 Pooling함

- ◆ **(함께 관리)** 인수한 보험위험을 Transfer하거나 Pooling함에 있어, 의사결정시 연계되어 함께 관리되는 단위
 (예시: XoL과 Q/S 등의 재보험 한도액을 결정할 때, XoL과 Q/S한도액 연계하여 함께 결정함)
 - 원수사: 재보험계약을 통한 보유정책 결정시 연계되는 단위
 (Treaty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출재되는 FAC(임의)도 함께 관리 대상)
 - 재보험사는 재보험요율기법 및 손익-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매출대상으로서 비례와 비비례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음

- ◆ **(계약그룹)** 재보험 Treaty 체결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재보험의 최소 단위는 Treaty이며, 이익정산도 Treaty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그룹은 Treaty를 기준으로 재보사, Cohort를 고려하여 지정하며, 재보험계약별로 기준서에서 정한 수익성을 평가하여 결정. 임의출재도 계약별로 평가
 (출재대상인 원수계약의 평가에 적용된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보험조건에 따라 나온 수익성 평가결과를 반영)

12. 계약의 경계

Q 12.1 재보험계약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 재보험계약의 조건상 권리-의무에 따라 계약의 경계가 결정
 - ※ 기준서 문단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은 서면뿐 만이 아니라 구두, 관행, 법규정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파악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출·수재 중단 옵션(Recapture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경계는 원수보험 만기까지 포함
 - 일반적으로 재보계약은 매년 갱신되는 형태(Yearly Renewable Term)로 체결되나, 갱신시점에 쌍방 합의 없이는 가격 재설정 불가
 - 쌍방 합의하 재보계약 미종료 시 원수 만기까지 재보 계약 유지
- ◆ 출·수재 중단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Case별로 재보험계약의 경계가 상이하게 정의
 - (Case 1) 원수사 또는 재보사만 출재 중단 옵션 존재 시, 계약의 경계는 원수계약 만기까지 포함
 - (Case 2) 원수/재보사 모두 출/수재 중단 옵션이 있는 경우, 양측 모두의 옵션 권한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의 경계는 단절됨
- ◆ 출재계약의 경계가 원수계약의 경계보다 긴 경우 출재계약의 경계에 맞는 원수계약 프로젝트 생성하여 반영 필요
 - 원수에서 계약 만기 이후 재가입 옵션이 있는 상품에 대해, 원수 재가입 옵션 행사 시점에 재보험 출·수재 중단 옵션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재계약의 경계는 원수의 재가입옵션 최종 종료시점까지 지속
(원수계약의 경계는 원수계약 만기 시점에 단절됨)

Q 12.2 미래 신계약의 반영은 어떻게 하는가?

- ◆ 재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래 신계약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합리적 추정치에 의해 미래 신계약의 현금흐름 생성
 - ◆ **재보험계약서상 신계약 출재 중단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의 신계약을 계약의 경계에 포함**
 - 원수/재보사 중 어느 일방이 일정 시점 후 계약해지를 사전 통보하면 해당 시점에 신계약 출재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신계약을 계약의 경계에 포함
 - 원수/재보사 모두에게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경우 미래 신계약 물량 반영 불필요
 - ◆ **미래 신계약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 신계약에 해당하는 모델포인트를 추가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생성**
 - 예시: 미래 신계약은 당월 신계약을 복제하여 생성한 후 포트폴리오 속성을 조정하여 반영
 - 상품 판매종료 예정, 신상품 출시, 신계약비 정책 변경 등으로 물량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효과 반영 가능
- ※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에 비해 출재비중이 낮고 미래신계약 물량의 변동성도 심하여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사는 PAA 적용 검토 중

13. 재보험 현금흐름

Q 13.1

재보험 정산단위보다 계약그룹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이익수수료 및 손해분담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방안 1 재보험 정산단위(Treaty)별로 이익수수료 산출하고, 동일하게 계약그룹별로도 이익수수료 계산하여 계약그룹별 이익수수료(또는 재보험료 - 재보험금)를 Driver 로 재보험 정산단위별 이익수수료 배분

- ◆ 계약그룹별 이익수수료 금액 비율로 이익수수료 총액 배분
 - 예시: 정산단위 이익수수료 100, 계약그룹A 30, B 20으로 산출된 경우, 계약그룹 A 60, B 40 으로 배분
- ◆ 계약그룹별 음의 이익수수료는 그대로 살려서 계산
 - 예시: 정산단위 이익수수료 100, 계약그룹A 40, B 30, C -20 으로 산출된 경우, 계약그룹A 80, B 60, C -40 으로 배분
- ◆ 정산단위 이익수수료가 0인 경우, 적절한 분리를 통해 이익수수료가 양(+)인 부분 산출 후 음(-)인 부분 배분
 - 예시: 정산단위 이익수수료 0, 계약그룹A 40, B 30, C -20 으로 산출된 경우, 계약그룹A 40, B 30, C -70 으로 배분
 - ※ 일부 회사는 (재보험료 - 재보험금) < 0 인 부분은 이익수수료를 배분하지 않고 양(+)인 부분에 한하여 이익수수료 배분

방안 2 재보험사의 직전 3년간 이익수수료 반영 후 평균순이익률을 기초로 평균순이익률을 충족을 위한 이익수수료를 역산하여 반영

- ◆ 예상이익수수료: 개별 계약(모델포인트)별로 산출
- ◆ 실제이익수수료: 평균 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기준으로 계약그룹에 배분

방안 3 원수계약에 적용된 손해율 가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되 재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익수수료율을 평가하여 산출함

- ◆ 재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도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현금흐름상 가정에 부합하는 이익수수료율을 산출하여 평가
- ◆ 별도의 배분 없이 계약그룹별로 동일 이익수수료율 적용

Q 13.2

재보험의 발생사고 부채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방안 1 평월은 IBNR을 \times 직전 1년 출재경과보험료 + 출재 O/S 로 계산하며, 연마감은 12월 말 기준 총량추산 평가액을 직접 반영

- 각 담보군별 원수 발생사고부채 현금흐름에 출재율 적용 후, 직전 1년의 특약별 출재 경과보험료 실적 기준의 현금흐름을 특약 가입시점별로 배분
- 각 특약 가입시점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분기(발생사고부채 평가주기) 단위로 담보군별/특약 가입시점별 IBNR을 산출
- 보유기준을 총량추산 방식을 적용(원수 발생사고부채 측정방식과 동일 기준)하여 원수-보유로 출재의 발생사고부채 및 IBNR을 측정
- 재보험자 신용리스크는 잔여보장부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

방안 2 재보험IBNR = 원보험 IBNR CF \times 담보별 출재율에 할인율 적용

14. 위험조정

Q 14.1 출재보험의 RA 산출 방안은 무엇인가?

- ◆ 출재보험의 현금흐름의 변동성만으로 출재계약 RA 산출

〈참고〉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2019년 6월

- ▣ (문단37)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
- ▣ (문단64) 문단 37을 적용하는 대신,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의 발행자에게 이 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 ◆ 원수보험위험에 근거하여 출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가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출재 계약 만의 RA 산출
 - 재보험 현금흐름에 원보험과 동일한 RA 산출 방법 적용 (각 해당 담보의 원보험 RA Factor 반영 등)
 - 단, 사업비는 출재대상 위험이 아니므로 해당 RA 측정에서 제외함
- ◆ 원수계약과 현금흐름 반영기간 및 평가대상이 일치하는 경우, 원수 RA - 보유 RA로 출재 보험 RA를 산출 가능 (원수 손상금액에 출재율을 반영출재되지 않은 계약의 RA)
 - 원수 기준의 RA 산출 결과값과 보유기준(원수보험계약에 재보험 현금흐름을 반영)으로 산출한 결과값의 차액을 재보험 RA로 정의하는 방안
 - 그러나, 원수계약과 현금흐름 반영기간 및 평가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실한 반영이 불가

15. 손실부담계약

Q 15.1 원수계약에서 손실 발생 시 재보험계약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 ◆ 원수계약집합의 손실 중,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예시: 보험위험만 출재하였는데 사업비에서의 손실이면 손상분을 인식하는 것은 회수권리가 없는 경우이므로), 재보험 출재비율만큼 이익으로 인식. 단, 원수계약집합의 손실에서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될 수 있는 권리 유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수계약집합 손실 전체 중 재보험 출재비율만큼을 이익으로 인식

〈참고〉 B119D 재보험계약집합 이익인식금액 = ① × ②

- ①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 ②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 계약집합 보험금 특정 비율

(Source :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2019년 6월)

- ◆ 원수계약(그룹)이 손상이 된 경우, 재보험 출재비율에 해당하는 손상분을 CSM이 아닌 P/L로 인식 (원수계약(그룹) 손상분 × 출재율)
- ◆ 원수계약(그룹) 손상 시 원수 손상금액에 재보험 출재율 반영하여 재보험 이익을 산출하여 P/L로 인식
 - 원수 손상금액에 재보험 출재율 반영하여 산출
 - ① 원수계약 그룹별 가중평균 출재율 산출
 - 예시1: 원수계약 그룹의 (당월말 재보험금 ÷ 당월말 원수보험금) (단, 가중평균 출재율 산출 시 미래신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 예시2: 원수계약 그룹 당월말 예상재보험료 현가합 ÷ 원수계약 그룹 당월말 예상원수위험보험료 현가합
 - ② 손상인 원수계약 관련된 재보 P/L 인식 금액 산출
 - 원수 손상금액 × 해당 그룹 가중평균 출재율
- ◆ PAA 손상 시 재보 CSM 처리(안)
 - 원수/수재 손실평가를 통해 산출한 손실부담부채를 해당 그룹내 개별계약에 배부하고 개별계약의 실적 출재율을 사용하여 연계손익 반영(최초, 후속평가 동일한 방법론 적용)

16. 투자요소

Q 16.1 재보험의 투자요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 재보험사가 모든 상황에서 재보 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소 금액을 투자요소로 정의

※ 단, 일부사는 재보험계약 조건별로 '모든 상황에서 재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소금액'의 요건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토 중

〈참고〉 B119D 재보험계약집합 이익인식금액 = ① × ②

- ①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인식한 손실
- ②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원수보험 계약집합 보험금 특정 비율

(Source :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2019년 6월)

- ◆ 계약자가 수령하는 재보험금과 이익 정산 수수료 합계가 모든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 금액
 - 투자요소는 정의에 부합하도록 특약의 내용에 맞게 해석 필요
 -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요소 산출방법 결정
 - 일반적으로 재보험료 금액에 이익수수료율을 반영한 금액을 투자요소로 인식
 - 이익수수료를 계약그룹별 통합 계산하는 경우, 당해연도 투자요소는 배분으로 산출

〈참고〉 하나의 특약으로 신계약 1년 초과를 포괄하는 경우(예시)

- ▣ (가정) 5년 계약(2015~2019년 신계약)누적, 이익수수료율 50%, 각 연도별 재보험료: 100, 2015년 계약한도 재보험금 1,000 → 총 이익수수료 0
- ▣ 계약연도별 이익수수료/투자요소 배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
재보험료	100	100	100	100	100
재보험금	1,000				
이익수수료	-200	50	50	50	50
투자요소	50	50	50	50	50

- 누적 손익이 이익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 투자요소는 누적 손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참고〉 Loss Carry Forward 옵션이 있는 경우(예시)

- ▣ (가정) 재보험 5년 계약(2015~2019년 신계약)누적, 이익수수료 50%, 손실 5년간 이연 옵션, 각 연도별 재보험료: 100
- ▣ Case 1) 2020년 결산 시 2019년까지 누적손실 중 1,000 이연 2020년 이익수수료는 0, 투자요소는 0
- ▣ Case 2) 2020년 결산 시 2019년까지 누적손실 없음, 재보험금 0 2020년 이익수수료는 250, 투자요소는 250

- ◆ 특약 출/수재에 한하여 적용(임의는 미적용)
 - 임의 재보험은 정산/이익에 따른 투자요소 발생이 사실상 없으며, 임의수재 NCB 조항은 해지 시 미해당 → 투자요소 미적용
- ◆ 이익수수료는 지급된 재보험금과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므로, 손해를 0인 경우의 이익 정산 수수료를 투자요소로 정의
 - 이익수수료는 재보험사 이익(재보험료 - 재보험금 등)에 고정(flat) 또는 변동(sliding scale) 수수료율을 반영하여 산출
 - 변동 수수료율은 재보험료 또는 재보험사 이익 수준에 따라 상이

〈참고〉 투자요소 산출 방안(예시)

- ▣ (가정) 재보험계약 만기 1년, 재보험료: 1,200 이익 정산 수수료 = (재보험료 - 재보험금) × 40%
- ▣ 계약연도별 이익수수료/투자요소 배분

구 분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재보험료	1200			
재보험금	0	200	400	600
이익수수료	480	400	320	240
계약자 수령액	480	600	720	840

(→) 총 투자요소: 480

〈참고〉 B68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기업이 집합 내의 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대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정도를 반영한다. (후략)

- (1)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
- (2) 다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 해당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제외

(Source :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2019년 6월)

- ◆ 분기별 보험 수익/비용에서 배분된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표시

방안 1 분기별 보험료 등 Driver에 따라 배부하거나,

방안 2 분기별 누적투자요소를 직접 산출해 배부

구분	장점	단점
(방안1)	직접 산출(방안2)에 비해 배분액 산출이 용이	배부액이 재보험금보다 클 경우가 발생
(방안2)	재보험금 패턴에 따라 배부액 결정 (배부액 < 재보험금)	누적 투자요소 계산 필요

〈참고〉 각 배부 방식별 산출 방안(예시)

- ▣ 재보험 예상현금흐름(회계연도: 1~3월 가정)하에서,

$$\text{투자요소} = (\text{재보험료 } 200 \times 3 - 0) \times 40\% = 240 \text{으로 산출}$$

구분	1월(예상)	2월(예상)	3월(예상)	4월(예상)
재보험료	200	200	200	600
재보험금	250	220	170	640

$$(\rightarrow) \text{이익수수료} = (\text{재보험료} - \text{재보험금}) \times 40\%$$

- ① 분기별 재보험료 기준으로 배부

구분	1월	2월	3월	계
배분금액	80	80	80	240

$$(\rightarrow) \text{배부금액} = 240 \times 200 \div 600 = 80$$

- ② 분기별 누적 투자요소 산출을 통한 배부

구분	1월	2월	3월	계
누적 투자요소	100	188	240	
당사 투자요소	100	88	52	240

$$1) \text{누적투자요소} = \{\text{총출재보험료} - \text{Max}(\text{총출재보험료} - \text{누적출재보험금}, 0)\} \times \text{이익수수료율}$$

$$2) \text{당기 보고기간의 투자요소} = \text{당기 누적투자요소} - \text{전기 누적투자요소}$$

Q 16.2

재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투자요소 경험조정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투자요소의 미래서비스 관련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두가지 처리방안 중 선택 적용

방안 1 B96 (3)에 의거하여 전체 CSM 조정 처리(즉, 보험료 및 투자요소는 CSM 조정, 투자요소 외의 보험금 및 이익수수료(투자요소 제외)는 PL 처리

방안 2 B96 (1)에 의거하여 미래서비스 관련 투자요소 경험조정만 CSM 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PL에서 처리. 단, 재보험계약의 투자요소는 대부분 미래서비스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고, 비중도 미미하므로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PL 처리(즉, 전체 PL 처리)

〈참고〉 B96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관련 현금흐름(예시: 보험 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이는 문단 B72(3)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 (3)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는 문단 B72(3)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참고〉 B235

IFRS 17에 따라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투자요소의 상황을 보험계약마진 에서 조정해야한다. 투자요소의 미래 상황의 감소를 포함하는(그러나 별도로 식별하지는 않는) 현금흐름의 미래 추정치의 변동도 보험계약마진 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로서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순효과는 투자요소의 상황 시기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게 된다.

(Source :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2019년 6월)

17. 비비례 재보험

Q 17.1 비비례 재보험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 ◆ 잔여보장부채에 PAA를 적용하고, 발생사고부채 평가 시 사고발생시점 할인을 적용
- ◆ 평가모형 및 실무적용방안
 - 재보험계약이 보험계약집합의 총손실액 규모가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계약인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인식(초과시점에 시작 아님)(BC305(b))
 - 비비례 재보험은 합리적인 재보험금 추정이 어렵고,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장기손해보험의 비비례 재보험에 PAA적용
- ◆ 잔여보장부채에 PAA를 적용하고, 발생사고부채 평가 시
 - 잔여보장부채를 PAA에 따라 평가하는 계약은 발생사고부채 평가 시 사고발생시점 할인을 적용
 - 재보험 발생사고부채 현금흐름 중 비비례 재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전 1년 출재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분리
 - 비비례 재보험계약의 연도단위 계약, 사고 일자 구분 불가 특성으로 인해 특약연도 시작시의 할인을 적용
 - 이외 나머지 프로세스는 비례 재보험의 발생사고부채 평가와 동일
- ◆ 손실계약여부/손실가능성 평가 방법

방안 1 원수계약의 현금흐름에 적용된 가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되 심도-빈도 모형에 따라 재보험조건을 적용하여 평가(대체로 손실가능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방안 2 합리적인 재보험금 추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 건을 손실가능계약으로 분류



기타

V

기 타

18. 납입면제

Q 18.1

납입면제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A 개요

- ◆ IASB는 2차례 TRG 회의를 통해 IFRS 17하에서 납입면제 관련 산출 Guideline(원칙)을 제시
 - 2018년 9월 TRG 논의 결과, 납입면제 관련 위험은 보험위험에 해당 된다고 판단 (계약자에게 존재하던 위험을 보험사에게 이전)
 - 2019년 4월 TRG 논의 결과, 보험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면제는 보험금(Claim)으로 간주하고 보험서비스 비용으로 처리

- ◆ 납입면제 발생 계약은 잔여보장 또는 발생사고 부채로 분류 가능
 - 2018년 9월 TRG AP01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은 잔여보장 또는 발생사고 부채로 분류 가능 (납입면제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사가 장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로 2018년 9월 TRG 논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
 - ① 보험사고를 ‘납면을 발생시키는 보험사고’ & ‘보험료 납입시점 도래’로 간주 시 잔여 보장부채로 분류 → (방안1)
 - ② 보험사고를 ‘납면을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로만 간주 시 발생사고부채로 분류 → (방안2)

B 주요이슈 및 방법론

방안 1 시점별 납입면제보험료를 잔여예상현금흐름에 반영

(예상유입 및 예상유출 현금흐름에 모두 반영)

- 시점별 예상납면보험료를 해당시점 예상보험금과 예상보험료에 가산
 - ① 2019년 4월 TRG 결과에 따라, 납면보험료를 보험금으로 간주하므로 예상보험금에 가산
 - ② 하지만, 현 현금흐름 로직상 수입보험료는 납입자, 지급금은 유지자 기준으로 산출되어 납면에 따른 준비금 부담 인식 중
 - ③ 이에 시점별 납면보험료를 예상보험금에만 가산하면 BEL이 과대 계상되므로 동일금액을 예상보험료에도 반영
- 납면보험료(보험금)의 예실차는 P/L로 반영하고, 관련 BEL 변동은 CSM으로 처리

방안 2 예상납면보험료 현가를 잔여 → 발생사고부채 분류

- 납면보험료(보험금)와 장래 납면현가의 예실차는 P/L반영, 관련 BEL 변동은 CSM 조정

◆ 납면 계약 관련 (방안1) vs. (방안2) 주요 차이

구분	① 분류	② P/L 인식액
(방안1)	잔여보장	당기 납면보험료
(방안2)	발생사고	당기 + 장래 납면보험료 현가

〈참고〉 (방안1) 납면 회계처리(예시)

▣ (가정) T=0 시점 예상보험료 80 (납면보험료 20 미포함)

T=0 시점 예상보험금 100, BEL 300

T=1 시점 실제보험료 90 (납면보험료 10 미포함)

T=1 시점 실제보험금 100, BEL 250

▣ 회계처리

① 예상보험금 Unwinding

차) BEL	160	대) 예상보험금(P/L)	160
		예상보험금 100	
		+ 예상당기납면 20	
		+ 예상납면현가 40	

② 실제보험금 지급

차) 실제보험금(P/L)	130	대) 현금	120
		대) 납면보험금(B/S)	10
		실제납면보험료 10	
		대) 발생사고 BEL	20
		실제납면현가 20	

③ 당기 보험료 예실차 처리

차) 현금	90	대) BEL	100

④ 당기 납면 예실차에 따른 미래 BEL 변동

차) BEL	30	대) CSM	30
--------	----	--------	----

〈참고〉 (방안2) 납면 회계처리(예시)

- (가정) T=0 시점 예상보험료 80(당기 납면보험료 20 미포함)
 T=0 시점 예상보험금 100, BEL 260(납면 발생 시 예상납면 현가 40)
 T=1 시점 실제보험료 90(납면보험료10 미포함)
 T=1 시점 실제보험금 100, BEL 250(납면 발생 시 실제납면 현가 20)

■ 회계처리

① 예상보험금 Unwinding

차) BEL	160	대) 예상보험금(P/L)	160
		<i>예상보험금 100</i>	
		<i>+ 예상당기납면 20</i>	
		<i>+ 예상납면현가 40</i>	

② 실제보험금 지급

차) 실제보험금(P/L)	130	대) 현금	120
<i>실제보험금 100</i>			
<i>+ 실제당기납면 10</i>			
<i>+ 실제납면현가 20</i>			
		대) 납면보험금(B/S)	10
		<i>실제납면보험료 10</i>	
		대) 발생사고 BEL	20
		<i>실제납면현가 20</i>	

③ 당기 보험료 예실차 처리

차) 현금	90	대) BEL	100
차) 납면보험료(B/S)	10		
<i>실제납면보험료 10</i>			

④ 당기 납면 예실차에 따른 미래 BEL 변동

차) BEL	30	대) CSM	30
--------	----	--------	----

The logo for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IAK) features the letters 'IAK' in a bold, serif font. A blue arc is positioned beneath the letters, suggesting a horizon or a bridge.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